

연구보고 2009-01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 과제

유 희 정
이 정 원
안 재 진
최 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육아지원 전자바우처 역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부모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는 i-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유치원 부모들 역시 9월 학기부터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사업을 거친 아이 즐거운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방식의 하나로 긍정적 기대와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우처 사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고 수요자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도입이 예정된 바우처 방식의 육아지원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첫째, 바우처가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체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바우처의 설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이라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함과, 둘째, 충분한 서비스 공급 등과 같은 선택권 증진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도 증진 등의 문제를 다뤘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에 참여해주신 유치원 원장, 유치원 학부모,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시설 학부모, 보육·유아교육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육아지원 바우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 정책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 요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도입되어온 바우처 제도를 육아지원 분야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가 부모 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육아지원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제도 도입의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바우처의 유형과 목적 및 전달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요 바우처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
-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바우처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하여 바우처 관리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연결 방식, 서비스의 질 관리, 전자바우처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함.
- 전문가, 육아지원기관장,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는 육아지원 바우처 운영과 관련된 의견,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함.
-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및 육아지원기관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바우처 카드의 부정한 사용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의 실질적 상승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점검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함.

3. 연구방법

- 국내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운영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 자료,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바우처 및 전자바우처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육아지원기관장 1,016명(유치원장 505명, 보육시설장 511명)과 이용아동 부모 847명(유치원 이용아동 부모 419명,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428명) 및 유아교육·보육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모에 대한 조사 문항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7문항)와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9문항)로 구성되었고, 육아지원기관장은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6문항), 도입으로 인한 기관 및 시설 차원의 변화(7문항)와 사용자인 부모의 변화에 대한 평가(5문항), 전자지불방식의 운영에 대한 의견(5문항), 전문가는 전자바우처 제도의 적정 운영방식(10문항)과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15문항),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3문항)로 구성되었음.
-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II. 바우처 제도와 육아지원 바우처

1. 바우처 제도

- 바우처 제도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적용대상 및 사용 방식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 바우처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공급 조정을 통한 공공복지 증진이며,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함. 따라서 효율적인 바우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바우처 운영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의 주요 바우처 제도

- 국내에서 바우처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 왔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들에 전자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어 왔음.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문화 바우처,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 사업 역시 명시적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바우처 제도는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대상과 전달체계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 대상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장시켰다는 공통의 사업 효과가 있음.

3.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 보건복지가족부의 i-사랑카드는 보육료를 부모가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보육행정체계에 금융기관과 바우처 관리센터가 연결되어 카드 발급과 단말기 보급 및 보육료 지급·정산 업무 등을 분담할 예정임. 바우처 제도 운영과 함께 기존의 e-보육시스템과 부모지원시스템 및 바우처 관리시스템이 결합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개인인증카드 기능만을 가진 학비 전용카드로 기존의 행정체계에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카드발급과 단말기 보급 및 유아학비 지급·정산 업무를 추가할 예정임. 전자카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유치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III. 주요 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1. 미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미국은 90년대부터 저소득 가족과 일시적인 공공 부조를 받는 가족, 그리고

교육훈련이나 취업을 위해 육아관련 공적지원을 받는 가족에게 육아발전기금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

- 육아지원 바우처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재원을 제공하고 주·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
-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주·지방정부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성과 기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reimburse) 결정, 바우처 제공기관 및 수요자 범위의 구체적 설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
- 미국 전역의 바우처 지급체계는 동일하지 않으며, 수요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육 바우처와 시설에 대한 약정(contacts)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바우처를 지급받은 가족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제공자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약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가족들은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육아제공자를 변경할 수 없음. 29개 주는 보육 바우처를 운영하며 26개 주는 약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바우처에는 부모와 아동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서비스 제공 시간, 주정부의 최대 지원 금액, 유효 기간 등이 기재됨.
- 전자지불방식(EBT) 방식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아동 양육 지원(Child Support Enforcement : CSE)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며, 수혜자들은 카드 발급 전에 주소지 지방관서에서 45-55분간 카드 사용법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2.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영국은 교육고용성이 유아교육 바우처(nursery education voucher)를 6개월간 실시하다 폐지하였고, 보육 바우처는 1999년 종이바우처 형태로 도입된 후 2004년 전자바우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짧은 기간 시행 후 폐지된 유아교육 바우처는 의무 취학 연령인 만 5세의 직전 연령인 만 4세 아동의 부모에게 1년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1,100 파운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였음. 하지만, 교육·보육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추가 지출 발생, 민간 시설의 저조한 바우처 제도 참가, 그리고 만 4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유리한 제도설계로 인한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후 시행이 철회됨.
- 1999년 도입된 보육 바우처는 근로 유인 제도의 하나로 고안되었음. 이 제

도는 기업이 근로자 급여 중 일정 부분을 보육 바우처로 제공(salary sacrifice)하고, 바우처로 제공된 급여 부분만큼 소득세와 국민보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2004년부터 시작된 전자바우처 운영의 중심에는 바우처 판매관리기관과 서비스 품질관리기능을 수행하는 OFSTED가 있음.
 - 바우처 판매관리기관은 민간이 운영하는데, 구매자는 판매관리기관을 통해서 전자바우처를 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판매관리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대금을 정산하고 지급받음. 판매관리기관은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전자환급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세액공제계산기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고안해내고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 기관인 OFSTED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보고서를 작성,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바우처 구매자들이 언제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함. OFSTED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만이 구매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 호주의 보육급여는 목시적 바우처 형태인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s, CCB)으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차등 지급됨. 지급 방법은 매월 보육료를 감면 받는 방법과 보육료를 지불한 후 환급받는 방법이 있음.
- 전달체계로 센터링크(centerlink)를 활용하고 있음.
 - 부모가 센터링크에 자녀의 연령과 특수한 조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고하면 센터링크는 소득수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보육지원금 액수,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알려줌. 부모가 선택한 보육시설을 센터링크에 알려주면 실시간으로 보육지원비가 시설에 직접 지급되고 보육시설은 부모에게 청구할 전체 보육료에서 센터링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청구함.
 - 센터링크와 전국의 보육시설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육시설은 분기별로 모든 아동의 시설이용 시간, 출석일수 및 결석 사유 등을 보고함.
- 의료보험 카드를 포함하여 수많은 복지카드(benefits card)를 액세스 카드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방향의 변화로 무산되었음. 액세스 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카드 리더기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며, 카드의 앞뒷면에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카드 소유자의 이름, 서명, 카드사용 만기일, ID 번호)와 사회서비스부에서 구축한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상세정보(법적 이름, 주소, 생일,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에 대한 상세정보, 디지털화된 사진, 서명, 카드번호, 카드사용 만기일, 성별, 개인 식별 번호(PIN) 등)가 저장될 예정이었음.

4. 소결 : 국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시사점

- 바우처 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관리 체계는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수요자에게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공급자가 실제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함.
-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IV.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수요자 인식

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가. i-사랑카드 인식수준

- 보육시설장은 i-사랑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90.2%). 상대적으로 부모의

인지도는 낮음(48.3%).

-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해 보육시설장들은 80.8%가 반대하였음. 민간 보육시설장들의 반대 정도가 가장 높고(매우 반대 59.1%, 반대하는 편 33.3%)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의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나. 예상되는 변화

-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44.0%가 선호하였고,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진다(37.3%)’와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진다(29.7%)’, 그리고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27.6%)’라고 밝힘. i-사랑카드 도입으로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부모들의 가장 큰 불편 사유는 ‘매달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었음.
- 보육시설장들은 i-사랑카드 도입이 가져올 보육료 지급 방식의 변화에 따라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과 ‘부모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반면, ‘영유아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음.
- 보육시설장들은 전자바우처의 장점으로 인식되는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의 도입이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반면, 보육시설장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 i-사랑카드 형태에 대해서, 부모들은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발급(41.5%)’을 가장 선호하였고, 카드 발급 시 ‘금액에 상관없이 연회비를 부담하겠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38.3%임. 카드 발급시 가장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용품 할인과 주유할인을 부가서비스로 선호하였음.
- i-사랑카드 신청 장소로 편리한 곳에 대해서 부모들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44.1%)’, ‘어린이집(30.8%)’과 ‘금융기관(25.1%)’의 순서로 선

택하였음.

- 보육시설장들은 적당한 카드결제 주기는 1개월(42.2%)이나 3개월(33.5%)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의 91.2%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며 카드결제 수수료 역시 부담이 크다고 밝혔음.
-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장 응답자의 84.3%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월 10,000 -15,000원 사이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보육시설장은 응답자의 8.4%임. 전자출석부 기능에 대해서 응답한 보육시설장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임.
- i-사랑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53.8%)’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 i-사랑카드 시행시기에 대해서 전문가, 부모, 보육시설장 모두 ‘시행 시기가 늦춰지겠으나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부모의 50%와 보육시설장의 82.2%가 ‘보육시설의 반대로 i-사랑카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임.
- 보육시설장들은 i-사랑카드 도입의 장애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간섭 심화’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소수 의견이나 ‘보육료 수입이 노출되는 것’도 지적하였음.
- i-사랑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보육 전문가들은 ‘카드 사용의 일반화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개개인이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i-사랑카드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보육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 현재 시설의 환경적 조건에서 카드사용 관련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부정한 사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시스템 설비와 관리비 부담 문제도 지적하였음.

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인식수준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해서 6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의 79.5%는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함.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일수록 전자카드제를 더 많이 알고 있음.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52.5% 유치원장이 반대하였음.

나. 예상되는 변화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 학부모 44%는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치원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아서(40.7%)’ 와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서(30.2%)’ 그리고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임.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으로 불편해질 것 같다고 전망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유는 ‘분기마다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었고 소수는 ‘개인정보 노출’ 의 문제도 지적하였음.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으로 기관 운영상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학부모의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 증가와 권리의식 증가’ 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였으나, ‘원비 수납일에 유치원 방문, 카드발급 및 관리의 부담 등의 불편 증대’ 에 대한 우려가 높음. 반면,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유치원 간 경쟁 활성화’ 와 그로 인한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부모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체감도가 증대될 것이며 정원 및 부정수급 관리가 용이해져서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부모의 권리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화가 부모의 만족도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유치

원장의 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예측함.

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액수는 유아교육 현장의 실비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59.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모의 적정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24.3%)임.
- 부모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신청에 가장 편리한 장소로 현재의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55.6%)를 들었고, 유치원(24.0%), 금융기관(19.9%) 순으로 응답함.
- 유치원장들은 76.5%가 부모부담금의 납부처로 금융기관을 선호하였고, 적절한 카드결제 주기로 분기별(3개월) 결제를 선호하였음. 또한 매월 일정한 날짜에 보조금이 입금되는 것을 선호함.
- 유치원장들은 62.5%가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반면 26.3%는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효율적인 원아관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한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7.4%)의 비중이 큼. 또한, 7개월~12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임.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 를 지적함.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 과 ‘제도의 복잡성’ , ‘단말기 등 추가비용부담’ , 그리고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모의 간섭 심화’ 등의 내용을 다양하게 지적함.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의견(39.5%)이 우세하였고,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제감도와 권리의식, 선택권이 증가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이미 구축된 질 높은 정보화 시스템

과 보편화된 카드사용 관행을 성공적인 정착의 이유로 지적함. 반면, 전자카드의 오·남용, 유치원 간 경쟁심화로 인한 파행운영과 그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저하, 유치원의 반발,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 등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역시 있음.

V.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제언

- 육아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이용 영유아들에게 우수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정단순화만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예산지원과 바우처 제도를 연결시키거나, 보육시설평가인증/유치원평가와 바우처 제도를 연결할 때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도출하게 될 것임.
-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 간편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육아지원 바우처 전달체계 안에 사기업인 금융기관과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정보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e-유치원 시스템)이 편입됨으로서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에 민감한 대책이 요구됨.
- 지금까지 육아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현장에 직접 수행하여 왔음. 지역별 형편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왔던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운영을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과 어떻게 연결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적용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공급체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고 동일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관에 따라 운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부 기관에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수요자 선택권의 의의가 감소되기 때문임.
-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유치원의 4가지 유형에 따라 보육/교육 비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식 역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이전에 영유아 1인당 육아지원 비용 산출은 물론 지원

방식 조정에 따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육아지원 바우처와 취원시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함.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공히 반일제와 종일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운영 시간에 따라 이미 비용을 각각 다르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바우처 가격 결정에서는 바우처의 대상이 반일제인지, 종일제인지, 만일 바우처가 반일제에 해당하는 지원이라면 종일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되어야 함.
- 제도 도입에 관한 부모, 유치원장 및 전문가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보육시설장 및 유치원 원장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불편함, 시설/원 재정운영 자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점,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함.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장들의 82.2%가 시설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충분하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다양한 정책설명 및 홍보를 통해 현장의 인식이 보다 더 높아진 후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1년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칠 필요 있음.

목 차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4
4. 용어정의	9
II. 바우처 제도와 육아지원 바우처	11
1. 바우처 제도의 이해	11
2. 국내의 주요 바우처 제도	16
3. 육아지원 바우처	33
III. 주요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47
1. 미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47
2.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54
3.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58
4. 소결 : 국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시사점	65
IV.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수요자 인식	68
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68
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93
V.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제언	115
참고문헌	123
부 록	127

표 목 차

<표 I-3-1>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부모, 시설장/원장	5
<표 I-3-2>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전문가	6
<표 I-3-3>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부모	6
<표 I-3-4>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시설장/원장	7
<표 I-3-5>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전문가	8
<표 II-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19
<표 II-1-2>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주요 내용	21
<표 II-1-3>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23
<표 II-1-4>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비교	24
<표 II-1-5>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25
<표 II-1-6>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의 주요 내용	28
<표 II-1-7>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29
<표 II-3-1> 만 5세 이하 아동분포 현황	34
<표 II-3-2> 2008년 보육예산	35
<표 II-3-3> 유아학비 지원 현황(결산기준)	42
<표 II-3-4> e-유치원 시스템 참여 주체별 구축 DB	45
<표 III-1-1> 바우처 발급 정책 유형 - 미국	50
<표 IV-1-1> i-사랑카드 인지 - 부모, 보육시설장	69
<표 IV-1-2> i-사랑카드 인지 - 전문가	69
<표 IV-1-3>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 - 보육시설장	70
<표 IV-1-4> 보육료 지원내역(2008)	71
<표 IV-1-5> 보육료 지원 인지 - 부모	72
<표 IV-1-6>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부모	72
<표 IV-1-7> 보육료 지원제도 불만족 이유 - 부모	73

<표 IV-1-8>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 - 부모	74
<표 IV-1-9> i-사랑카드 도입 선호 이유 - 부모	75
<표 IV-1-10> i-사랑카드 도입 비선호 이유 - 부모	75
<표 IV-1-11>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1 - 보육시설장	76
<표 IV-1-12>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2 - 보육시설장	78
<표 IV-1-13>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 전문가	79
<표 IV-1-14>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80
<표 IV-1-15> i-사랑카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 - 전문가	81
<표 IV-1-16>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방안 - 전문가	81
<표 IV-1-17> i-사랑카드 추가 지원 항목 - 전문가	82
<표 IV-1-18>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부담의사 - 부모	82
<표 IV-1-19> i-사랑카드 선호 혜택 - 부모(복수응답)	83
<표 IV-1-20> i-사랑카드 적정 결제 주기 - 보육시설장	84
<표 IV-1-21>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적정 부담 - 보육시설장	85
<표 IV-1-22>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의 부담정도 - 보육시설장	85
<표 IV-1-23> I-사랑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적정 부담 - 보육시설장	86
<표 IV-1-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 - 보육시설장	87
<표 IV-1-25> 적절한 i-사랑카드 신청 장소 - 부모	88
<표 IV-1-26> i-사랑카드 홍보수단 - 전문가	89
<표 IV-1-27> i-사랑카드 시행 예상 - 전문가	89
<표 IV-1-28> i-사랑카드 시행 예상 - 부모, 보육시설장	90
<표 IV-1-28> i-사랑카드 시행 어려운 이유 - 부모, 보육시설장	90
<표 IV-1-30> i-사랑카드 도입의 장애물 - 보육시설장	91
<표 IV-1-31>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 전문가	92
<표 IV-2-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부모	93
<표 IV-2-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유치원장	94
<표 IV-2-3>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찬반의견 - 유치원장	95
<표 IV-2-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전문가	95
<표 IV-2-5> 현행 유아학비 지원 단가	96
<표 IV-2-6> 현행 유아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 부모	96

<표 IV-2-7> 현행 유아학비 지원 수혜경험	97
<표 IV-2-8>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부모	97
<표 IV-2-9>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사유 - 부모	98
<표 IV-2-10>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의견 - 부모	99
<표 IV-2-11> 전자카드제 도입이 좋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99
<표 IV-2-12> 전자카드제 도입이 불편할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99
<표 IV-2-13>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0
<표 IV-2-14> 예상되는 시설 운영상의 변화 - 국공립 / 사립 유치원장의 의견 비교	101
<표 IV-2-15> 예상되는 부모 입장에서의 변화 - 국공립 / 사립 유치원장의 비교	102
<표 IV-2-16>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변화에 대한 의견 - 전문가	103
<표 IV-2-17>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104
<표 IV-2-18> 전자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 - 전문가	105
<표 IV-2-1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통한 지원 액수 결정 - 전문가	105
<표 IV-2-20> 전자카드 지원금 외 추가부담금 납부처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6
<표 IV-2-21> 전자카드의 적절한 결제주기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6
<표 IV-2-22> 선호하는 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7
<표 IV-2-23>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의사 - 유치원장	108
<표 IV-2-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9
<표 IV-2-25>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10
<표 IV-2-26> 부모가 선호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신청 장소	110
<표 IV-2-27> 전자카드제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한 의견 - 전문가	111
<표 IV-2-28> 전자카드제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12
<표 IV-2-2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113

그림 목차

[그림 II-3-1] 보조금 통합지원(만0세아)	37
[그림 II-3-2] 유아포탈 개념도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부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등의 이유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육아지원 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3년도 1조 2천억원이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육아지원예산은 2008년도에는 4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육아지원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자 증가된 정부 지원금이 당초의 지원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이러한 정책효과를 인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어온 바우처(Voucher, 이용권) 제도를 육아지원 분야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i-사랑카드로 불리워지는 보육전자바우처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지금까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던 묵시적 바우처를 명시적 바우처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인 부모에게 직접 제공되는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고, 전자카드 형태의 제공 방식은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명한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역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비용 지원을 이용권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의3 신설). 또한, 보육비용 지원에 필요한 보육비용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금융재산의 조사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 신설),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특히 육아지원 바우처는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인데,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에 15만명, 2008년에 55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료 지급 방법

이다. 이와 같은 전자바우처 제도는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의 긍정적 대안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도입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전자바우처 제도의 확산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관련해서 이들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전자바우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카드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단말기 관련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이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악화를 가져오지는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물론, 육아지원 바우처의 사용처가 육아지원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경쟁자와 시장의 출현은 예상되고 있지 않으며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제공 대상자의 자격에도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적들은 육아지원에서는 이미 이동별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가 육아지원기관에 지급되는 형태의 묵시적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이 예상되어 있는 육아지원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육아지원 바우처의 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최소화하여 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현황, 둘째, 육아지원 바우처의 특징 및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외국 사례 분석, 셋째, 육아지원 전자바우처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요자의 인식 및 태도 분석, 그리고 육아지원 바우처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언을 덧붙였다.

가. 육아지원 바우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바우처 제도의 특성 및 바우처 도입과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바우처 제도 도입시 고려할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간 국내에 도입되었던 주요 바우처 제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바우처 사업의 목적, 서비스 내용 등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 육아지원 바우처 국외 사례 분석

전자바우처 제도의 시행 초기인 국내의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전자지불방식 제도를 먼저 운영해 온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바우처 관리 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연결 방식, 수요에 반응적인 제도 구축, 서비스의 질 관리,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초점을 두었다. 호주 사례의 경우는 보육 바우처 이외에 액세스 카드를 중심으로 한 전자바우처 도입계획 및 철회과정 또한 살펴봄으로서 전자바우처 형태인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인식 조사

전문가, 육아지원기관장,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와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먼저, 육아지원 바우처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대한 인지와 선호 및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고,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장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제도 도입을 통해 육아지원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변화에 대한 의견 또한 수집·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육아지원 바우처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수요자 의견 조사는 바우처 발급장소 및 연회비 부담 의사,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및 단말기 관리 문제 등과 같은 것으로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한 세부적 운영 방식에 관한 것들이다.

라. 효과적인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제언

육아지원 바우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국 사례와 수요자 인식조사 및 자문

회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및 육아지원기관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의 실질적 상승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점검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국내 유관 사례 및 외국 사례 분석, 정책 수요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 문헌연구

바우처 제도 및 전자지불방식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국내 바우처 사업 및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헌 및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문헌은 바우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선행 연구, 전자바우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내부 정책자료 등이 수합되어 분석되었다. 그리고, 바우처 제도와 전자지불방식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 바우처 제도 도입이 활발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 운영 방안을 고찰하였다.

나.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장 및 이용아동의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치원 8,063개와 보육시설 30,856개를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비례 할당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황표를 이용하여 체계적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는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각각 40명씩 선정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장 및 이용아동의 부모 조사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우편조사와 전화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정책 수요자는 1,863명이며 이 중 육아지원기관장은 1,016명(유치원장 505명, 보육시설장 511명)이고 이

용아동의 부모는 847명(유치원 이용아동 부모 419명,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428명)이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1-3-1>과 같다.

<표 1-3-1>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부모, 시설장/원장

			부모	시설장/원장	합계
유치원	국공립	빈도	154	251	405
		비율	36.6	49.8	43.2
	사립	빈도	265	254	519
		비율	63.4	50.2	56.8
	소계	빈도	419	505	924
		비율	100.0	100.0	100.0
보육시설	국공립	빈도	188	131	319
		비율	43.9	25.6	34.0
	법인	빈도	81	118	199
		비율	18.9	23.1	21.2
	민간	빈도	82	135	217
		비율	19.2	26.4	23.1
	가정	빈도	77	127	204
		비율	18.0	24.9	21.7
	소계	빈도	428	511	939
		비율	100.0	100.0	100.0
	합계	빈도	847	1016	1,863
		비율	100.0	100.0	100.0

유아교육, 보육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전문가는 71명으로 유아교육 전공 59.2%, 아동학 전공 17.6%, 보육학 전공 9.7%, 기타 13.5%이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1-3-2>와 같다.

2) 조사도구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구체적인 지표 및 항목들에 대해서 응답표본에 대한 예비조사 및 문항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전자바우처 제도의 수요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7 문항)와 전자바우처 도입에 대한 태도(9문항),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구성되었다(<표 1-3-3> 참조).

<표 1-3-2>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전문가	합계
유아교육학	빈도	37	8	45
	비율	92.5	25.8	59.2
아동학	빈도		11	11
	비율		35.5	17.6
보육학	빈도		6	6
	비율		19.4	9.7
기타	빈도	3	6	9
	비율	7.5	19.4	13.5
합계	빈도	40	31	71
	비율	100.0	100.0	100.0

<표 1-3-3>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부모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육아지원수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제도	제도인지	명목
		제도만족	4점
		불만족이유	명목
		수혜여부	
	지원액인지	명목	
	육아지원기관행태		육아지원기관지원액 고지 부정수급 사례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태도	인지여부	명목
		평가	
		선호 이유	
		비선호 이유	
		시행기대	
	제도운영방식	미시행 이유	명목
		선호하는 신청 장소	
		연회비 부담의사	
		선호하는 사용자 혜택	1-2순위
사회경제요인	지역	16개 광역자치단체	명목
	지역크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시설이용	시설유형, 이용기간	명목, 서열
	인적특성	아동연령, 부모 연령 및 성별 학력, 가구소득, 모의 취업상태	명목

전자바우처 제도의 공급자인 시설장/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6문항), 도입으로 인한 기관 및 시설 차원의 변화(7문항)와 사용자인 부모의 변화에 대한 평가(5문항), 전자지불방식의 운영에 대한 의견(5문항)과 시설장/원장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구성되었다(<표 1-3-4> 참조).

<표 1-3-4>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시설장/원장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인지여부	명목
			명확한 인지	4점
			도입 찬성	
			도입 장애요인	명목
			시행기대	
			미시행 이유	
	도입에 따른 변화기대	기관 및 시설차원	교사행정부담	4점
			신규 영유아 영입	
			시설·기관간 경쟁	
			경영 도움	
			시설·기관 서비스 수준	
			영유아 관리 어려움	
		행정기관과 수평적 관계 형성	4점	
		부모차원		정책 제감도
	권리의식			
	방문 불편			
	카드 관리 부담			
	전자지불 방식운영	카드 결제	부모의 결제 주기	명목
			적정 결제 수수료	4점
결제 수수료 부담정도				
단말기		적정 유지보수비용	명목	
전자출석부		필요성	5점	
사회경제요인	지역		16개 광역자치단체	명목
	지역크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시설특성		시설유형, 아동현원, 설립년도	명목, 서열
	인적특성		연령, 성별, 직위, 학력, 근무기간	명목

그리고,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자바우처 제도의 적정 운영방식(10문항)과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15문항),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3문항)로 구성되었다(<표 1-3-5> 참조).

<표 1-3-5>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전문가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인지여부	명목	
		시행기대		
		성공적 정착기대		
	도입에 따른 변화기대	정부차원	행정부담경감	5점
			시설차원	서비스 질
		민간시설공급확대		
		절차 투명성		
		업무 간소화		
		영유아 수 증가		
		경쟁 증대		
		미취업모 아동이용 증가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상승		
		부모차원	정책 제감도	5점
			권리의식	
			바우처 오남용	
	사용 불편			
	낙인 감소			
	적정 운영방식	보조금기준	소득계층	명목
			아동연령	
모의 취업여부				
이용시간				
자녀수				
지원범위		출생순위	명목	
		지원액 결정방식		
관리		지원항목	명목	
		서비스질관리방식		
		정보전달수단		
인적 특성		성별, 연령, 전공	명목	

다. 자문회의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 담당자와 현장종사자를 중심으로 6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을 수행한 정책 담당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바우처 자문단의 일부와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바우처 제도가 전달체계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문단 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자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현장 종사자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용어 정의

가. 육아지원 바우처

바우처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 바우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통합하여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에 지불하던 유아교육비를 전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포괄한다.

또한, 쿠폰이나 카드 등 명시적 형태의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보고하는 수요량에 따라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묵시적 바우처로 지칭될 수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지원 바우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기존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전자지불방식(electronic benefit transfers:EBT)

전자지불방식은 종이(coupon, 수표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결제 방식으로 수혜자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지불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 수혜자들을 위하여 일종의 가장 계좌를 개설하거나 수혜자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하여 정부의 수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지불방식은 전자식 현금보조(electronic cash support)와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 두 종류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자는 수혜 금액이 수혜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범위 내에서 수혜자들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금액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지불 방식이라는 용어는 전자식 현금보조를 제외하고 육아지원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Ⅱ. 바우처 제도와 육아지원 바우처

본 장에서는 바우처 제도 전반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바우처 제도 및 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1. 바우처 제도의 이해

가. 바우처의 정의 및 유형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유한옥, 2006에서 재인용). 즉,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coupon)이나 카드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 규정된다(정광호, 2007). 바우처는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보육 등 광범위한 서비스에서 이용되며, 바우처의 형태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Steuerle, 2000).

먼저 바우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구매력이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다. 푸드 스탬프는 개인이 직접 식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제공하는 반면, 주택 바우처의 경우는 바우처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는 하나,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이 지불된다. 이렇듯 직접적인 구매력이 제공되는 경우를 명시적(explicit) 바우처, 간접적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를 묵시적(implicit) 바우처로 구분한다.

둘째, 바우처는 비용지불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세제지원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주택 바우처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제공되기도 하나 세금공제(tax credit) 형태로 설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환급

(reimbursement) 바우처로 구분된다.

셋째, 바우처가 제공하는 구매력은 일반적으로 제한되거나 상한선을 갖는다. 예를 들면, 미국의 푸드 스탬프는 매월 50달러로 금액이 정해져있다. 또한 상한금액에 있어서도 사용자 부담비율이나 세금공제를 포함하거나 비용의 일부만을 보전해주도록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바우처 금액이 수혜자에게 균일하게 제공되는 경우 균일 바우처로, 수혜자 조건에 따라 혹은 공급자가 제시하는 서비스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차등 바우처로 구분하며, 바우처 금액의 추가 소비 가능성에 의해, 추가 소비 가능형(top-up) 바우처와 추가 소비 불가능형 바우처(no top-up)로 구분한다(신은수, 2007).

넷째, 바우처는 일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는 하나, 이용의 자유를 규제한다. 바우처 사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집이나 학교 등의 선택), 바우처의 종류에 따라 공급자는 공공기관일 수도, (영리 혹은 비영리) 민간기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적이어서, 주택 바우처로 옷을 구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선택권의 허용범위는 서비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바우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 공급보다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현금지불보다는 더 많은 규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우처는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바우처의 목적

바우처 제도의 주요 목적은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유한욱, 2006), 이밖에도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바우처를 활용하는 다양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한욱, 2006; 정광호, 2007).

첫째,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는 공급자간의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과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와의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이 포함된다(Cave, 2001, 유한욱, 2006에서 재인용).

둘째, 특정목적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고 할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바우처를 이용한다. 특히 바우처는 사용의 용도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

로 국한시킴으로써, 표적집단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어 현금지급보다 효과적이다.

셋째,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넷째,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 부문에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민간부문의 생산 시설이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관료제에 내재된 비효율성 문제를 꾀할 수 있다.

다섯째, 바우처는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액을 한정함으로써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해준다.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프로그램(entitlements)과 달리, 사전에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발행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는 계약생산방식에서 비롯되는 비효율 및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지원이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 수혜자들의 선호도와 수요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최적 규모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최적규모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유한욱(2006)에 따르면, 바우처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에 명시적 바우처가 도입되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바우처가 확대 도입될 때 예상되는 전달체계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정광호, 2008).

첫째, 기존에 선택권을 갖지 못했던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서비스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동안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시혜'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수혜자가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반면 바우처 제도에서는 일정한 소비자 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자신이 돈을 내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제공받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급자의 교체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의 강화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킬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위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조건에서야 비로소 바우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증진은 의미를 갖는다.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존재할 경우, 바우처 방식이라도 선택권 제고에 따른 소비자 지향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비스 기관의 재정수입이 정부와의 관계가 아닌 해당 기관 이용자인 서비스 이용자의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수혜대상자, 즉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관계는 과거의 강력한 수직적 통제 또는 밀착 관계를 벗어나 보다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수혜자 보호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각종 행정업무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특히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바우처 자격기준 심사, 바우처 발급, 바우처 사용 대가 지급 등을 전담하는 바우처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된다면 정부의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라. 바우처 제도 도입시 고려할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매우 다양하며, 잘 활용될 경우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됨으로써 부작용도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바우처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 간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공급자 간의 경쟁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 경쟁(voucher maximizing)만을 초래할 수 있다(유한욱, 2006에서 재인용).

둘째, 바우처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기존에 공급자들 간의 독

과점이 발생하여, 담합에 의한 추가 이익을 취할 유인이 발생한다(정광호, 2008).

셋째, 수혜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는 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의 품질 수준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바우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와 공급자를 매개시켜주는 기능이 중요하다(정광호, 2008). 예를 들면,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의 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바우처 설계는 대상사업의 구조 파악과 그에 따른 바우처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금화 유용 방지와 품질 유지는 개별 사업의 바우처 형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김진, 2007). 바우처 유용의 형태는 바우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수혜자의 수에 비례하여 공급자에게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 수급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시적 바우처의 경우는 수혜자가 바우처를 전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유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엄격히 처벌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바우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행정비용의 상승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바우처 제도는 전달 과정에서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바우처의 발행기관은 초기 바우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수혜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과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운영비용이 든다. 또한 공급자는 비용 청구 과정에서 운영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전자바우처 사용을 위한 단말기 구입 및 관리비용과 전자카드 수수료(바우처를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할 경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적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성공 및 실패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국내에 이미 도입된 바우처 사례들을 통해 배움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주요 바우처 제도

지난 2007년 사회서비스 센터가 만들어지고, 사회서비스 영역에 바우처가 도입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수단으로 바우처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기관이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유한옥, 2006; 정광호, 2007; 정광호, 2008).

첫째, 부처마다 바우처 도입의 배경이나 동기가 상이하다. 기획예산처(현재 기획재정부로 개칭)의 경우, 바우처를 예산통제나 절감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예산배분과 연계하여 각 부처에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원리를 이용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정부부처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방과후수강권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를 이용해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에는 사회투자과 사회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기존의 복지패러다임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혁신서비스라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약 200개가 넘는 지역단위 바우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넷째, 바우처 사업에 전자금부 방식이 접목되면서 전자바우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존의 종이바우처에 비해 전자바우처는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앞으로 도입될 바우처 사업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의 바우처는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바우처를 활용한 국내의 주요 사업들 가운데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를

통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 서비스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제도들 가운데 명시적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미 2007년 4월, 사회서비스 4대 사업(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전자바우처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바우처 형태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사회서비스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의 적용범위는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는 분야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에는 보건위생·방역·의정(의정)·약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2009년 2월 도입)과 i-사랑 보육서비스사업('09. 하반기 도입 예정)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현재 사회서비스 센터를 통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 개관하였다. 여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가구 평균 소득의 150%(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약 587만원) 이하이고, 노인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 55점 미만(55점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인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갖춘 전문 돌보미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서비스 수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시범사업 포함)를 받고 있는 노인과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격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독거노인인 경우와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고 27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는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월 27시간(A형)과 월 36시간(B형) 중 선택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A형이 월 36,000원, B형이 월 48,000원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경우 50%를 경감해준다. 서비스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007년에는 서비스 인정시간이 월 27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월 36시간도 선택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이용시간이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의 불만과 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광호, 2008).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과견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도 가능하다. 2007년도의 경우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에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시장이윤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당초 기대한 효율성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이재원, 2008).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참여기관의 유형을 확대하여 민간영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약 587만원) • 건강상태 기준: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55세 미만 (55점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의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시범사업 포함)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어야 익월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희망하는 '월 서비스 시간량'에 따라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7시간(A형): 월 36,000원 • 월 36시간(B형): 월 48,000원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 50% 경감 - 인정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 입회시)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지원 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보건소 협조)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등 • 제공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제공인력: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존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시혜적 돌봄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이재원, 2008). 첫째, 수혜 대상층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자부담비율을 차등화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적 임금으로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즉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효(孝)상품으로 홍보하였다. 셋째, 청장년기 근로소득 기간에 납부한 세금을 고령자가 되었을 때 국가의 사회서비스로 돌려받는다’는 ‘납세자에 대한 국가 책임’ 특성도 고려되었다. 이 서비스는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가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어 독거노인이 된 경우에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의 맞벌이로 시설에 살 수 밖에 없게 된 노인들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가족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월 이용시간이 여전히 적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정광호, 2008).

2)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실시하였던 시범사업을 2007년도부터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바우처라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로, 육아지원 바우처 사업과 유사점을 갖는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최중증 장애인(15종 전체)이 모두 지원대상이며(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월 0~4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인정조사점수의 기준과 대상자의 연령, 독거 여부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최대 180시간까지 서비스 인정시간이 주어진다(<표 II-1-2>참조). 인정조사점수에 따른 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월 인정시간이 부여된다.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1, 2등급의 경우 60시간, 3,4등급의 경우 40시간의 인정시간이 주어진다. 한편, 서비스 대상자들 중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된 대상자들에게는 월 20시간씩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노인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고 27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공공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며, 노인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격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기본 60시간/보수 20시간)을 이수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표 II-1-2>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주요 내용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연령: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만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및 만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용 • 소득기준: 없음 • 건강상태 기준: 인정조사점수 220점 이상인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어야 익월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별 서비스 인정시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등급</th> <th>등급별점수대(점)</th> <th>월 인정시간(성인)</th> <th>월 인정시간(아동)</th> </tr> </thead> <tbody> <tr> <td>특례180</td> <td>400~445</td> <td>180시간</td> <td></td> </tr> <tr> <td>특례120</td> <td>380~399</td> <td>120시간</td> <td></td> </tr> <tr> <td>1등급</td> <td>380~445</td> <td>100시간</td> <td rowspan="2">60시간</td> </tr> <tr> <td>2등급</td> <td>346~379</td> <td>80시간</td> </tr> <tr> <td>3등급</td> <td>281~345</td> <td>60시간</td> <td rowspan="2">40시간</td> </tr> <tr> <td>4등급</td> <td>220~280</td> <td>40시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만6세~만18세 미만 ※ 독거특례(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된 대상자): 20시간씩 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소득수준</th> <th>기초생활수급자</th> <th>최저생계비120% 이내</th> <th>최저생계비120%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본인부담금</td> <td>면제</td> <td>월 2만원</td> <td>월 4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등급	등급별점수대(점)	월 인정시간(성인)	월 인정시간(아동)	특례180	400~445	180시간		특례120	380~399	120시간		1등급	380~445	100시간	60시간	2등급	346~379	80시간	3등급	281~345	60시간	40시간	4등급	220~280	40시간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120% 이내	최저생계비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등급	등급별점수대(점)	월 인정시간(성인)	월 인정시간(아동)																																			
특례180	400~445	180시간																																				
특례120	380~399	120시간																																				
1등급	380~445	100시간	60시간																																			
2등급	346~379	80시간																																				
3등급	281~345	60시간	40시간																																			
4등급	220~280	40시간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120% 이내	최저생계비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서비스 내용	세면·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제한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기본 60시간/보수 20시간)을 이수한 자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3)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2007년도까지는 종이 바우처로 운영되었으며 2008년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50% 이하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196만원).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제외한다(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서비스 대상자는 위와 같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 출산(예정)일 3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 사산이나 유산을 한 자이다. 또한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긴급지원 종료 후 무직 가정 등)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해산급여대상자(해산급여 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와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및 중증 장애인 산모 여부에 따라 2~4주이며, 가구소득에 따라 46,000원 또는 9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이틀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지역자활센터, YWCA 등), 서비스 제공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80시간/경력자 20시간)을 이수한 자이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196만원 정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30일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가능 ● 제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급여대상자(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담당부서 확인 후 이용가능)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한 서비스 수혜 가구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A)	바우처지원액 (B)	총구매력 (C=A+B)
	단태아	2주 (12일)	40% 이하	46,000원	596,000원	642,000원
			40%~50%이하	92,000원	550,000원	(53,500원/일)
	쌍생아	3주 (18일)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40%~50%이하	92,000원	1,088,000원	(65,556원/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 (24일)	40% 이하	46,000원	1,071,000원	1,747,000원	
		40%~50%이하	92,000원	1,655,000원	(72,792원/일)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 이상 ●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중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80시간/경력자 20시간) 이수자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부가 기존의 유사 사회서비스와는 운영 방식에서 완전히 구분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발굴·선택하고 중앙정부가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이재원, 2008).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의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는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지자체가 선택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지자체가 배정된 예산의 2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은 보편형과 지역맞춤형, 혹은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II-1-4>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비교

구분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지역맞춤형바우처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지자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사업 성격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고 전국단위 공급이 용이한 사업 위주	서비스 수요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전국단위 공급이 어려운 사업 위주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침, 정광호(2008)에서 재인용.

현재 표준형 지역사회서비스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2세~만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391만원)이며 가구당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액은 기본 월 20,000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은 월 27,000원이 지원된다. 단, 2008년도 기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기존 바우처 지원액(월 25,000원)을 유지한다.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비만아동 관리서비스는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 중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가구 내에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 40,000원이며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공통적으로 10개월로, 서비스 개시 월부터 10개월 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표준형 지역사회서비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는 자체개발형 혹은 지역개발형 서비스가 있다. 지역개발형 서비스의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서비스 성격, 이용자 욕구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형 또는 자체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 2개 이상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각 시·군·구별 사업내용은 차별화되어 있어, 장애아동 재활심리치료 등 30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각 시·군·구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현황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개발형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사회 기반 확충 효과가 의심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이재원, 2008).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승인이 있어도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수행될 수 없다. 적은 비용이지만 자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충분하여야 서비스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현실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

<표 II-1-5>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대상	만2세~만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1가구 1인 지원 (200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약 391만원) 	만7세~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비만 정도 증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없음 • 비만기준: 비만지수 20% 이상 ※ 판정기준: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동일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 지원 가능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어야 익월 서비스 이용가능
바우처 지원액	대상자별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아동: 월 27,000원 • 그 외 지원대상자: 월 20,000원 ※ 단, 2008년도 기 지원대상자는 기존 바우처 지원액(월 25,000원)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지원액: 1인당 월 40,000원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제공기관별로 다양)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 관련 정보제공 및 독서지도방법 교육 등 ※ 한글 등 기존 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 논술 등 직접적 학습지도 제외 	대상아동 및 부모에 대해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영양교육, 각종 정보 등 서비스 제공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10개월(서비스 개시 월부터 10개월간 지원)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2004년 하반기 도입되어 2008년도 9월부터 무선전파방식(RFID)의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무선전파방식 전자바우처는 기존 바우처 사업에 적용되던 전용단말기의 결제방식과 달리, 도우미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고 카드 접촉이 아닌 무선전파로 서비스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의 부피와 무게로 인한 휴대의 불편함, 접촉식 결제에 따른 예러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휴대폰 기반의 무선전파방식 전자바우처 방식은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나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이나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어야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한 후에야 '바우처 지원액'의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27시간과 3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이월되지 않고 해당 월 말일에 소멸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 가운데 지정 교육기관에서 가사간병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의 보다 자세한 개요는 <표 II-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6>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의 주요 내용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p>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소득 및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건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55점 미만). 단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자 - 재가서비스 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병원에 입원한 중증질환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되어야 익월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 부담금	<table border="1" data-bbox="448 1144 1233 1272"> <tr> <td rowspan="2">서비스 인정시간</td> <td colspan="2">본인부담금</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td> <td>차상위계층</td> </tr> <tr> <td>27시간</td> <td>면제</td> <td>월 17,820원</td> </tr> <tr> <td>36시간</td> <td>월 8,280원</td> <td>월 23,760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소멸(이월 없음)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가능(인정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서비스 인정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시간	면제	월 17,820원	36시간	월 8,280원	월 23,760원
서비스 인정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시간	면제	월 17,820원										
36시간	월 8,280원	월 23,760원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2개 이상 제공기관 복수지정 -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관련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 • 제공인력 - 학력제한 없음. 만18세 이상의 가사간병서비스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계층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가사간병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자격 취득자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6) 출산 전 진료비 지원

2008년 12월 도입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며, 의료급여나 의료보호 수급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이며, 20만원 한도(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고운맘 카드를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지정요양 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받은 기관이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된다.

<표 11-1-7>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목적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지원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급여기간은 임신기간 중 지속적으로 출산 전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출산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퇴원 진료비용까지임
서비스 제공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

나. 기타 바우처 제도

위에서 살펴본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외에도 국내에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시행 중인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2009년 도입 예정 중인 육아지원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제도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바우처 제도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가 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방과 후 학교는 2006년 10월~12월까지 전국의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및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단위학교가 주체가 되어 바우처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본교 뿐 아니라 인근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격차가 학업성취도 격차, 임금 격차,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 제고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우수 교사

진의 확보, 프로그램 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넷째, 시·도 교육청,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2007년에 30만 명, 2008년도에는 3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예산규모를 1,265억원으로 확대하여, 2008년보다 3만 명 늘어난 35만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 35만명은 1인당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권을 쓸 수 있다(한국교육신문 2008년 9월 30일자).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식도 ‘원스톱 방식’으로 통합되어, 지금까지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정보통신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2009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가지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문화 바우처

문화 바우처는 복지고급화의 일환으로 일종의 사회적 권리인 문화·예술 향유권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문화소비의 계층간 차별완화 및 문화 분야로의 긍정적인 산업연관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2005년 4월~12월까지 국고 4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운영된 문화 바우처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메세나협의회,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의회 등 5개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였으며, 1인당 3만원 이내의 쿠폰을 발급하여 국악,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영화,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일반인 등 30,633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도에는 국고 6억원에 복권기금의 소외계층 관련사업 기금 20억원을 통합하여, 총 예산이 2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수혜대상도 80,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도 문화 바우처 사업예산안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인 한국어 교육 등 2개 사업에 총 2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 바우처에 할당된 예산은 20억원이다. 2008년도에는 2개 사업 예산인 23억원 가운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0억원이 문화 바우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최성은·최석준, 2008).

한편 2006년도부터는 기존의 문화 바우처와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을 통합한 바우처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은 문화 바우

처 사업과 지역순회 문화프로그램¹⁾으로 구성되며, 문화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가입시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ok-life)을 통하여 저소득층임이 확인되면 정회원 인증을 받는다. 정회원이 되면 개인별로 연간 5,000포인트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이용시 프로그램별로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 회원들 중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회원 이외에 동반자 1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동반인원에 대한 포인트는 회원 포인트에서 차감되지 않는다(www.artstour.or.kr). 또한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지역에 문화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처가 있으며, 이들은 지역의 좋은 공연, 영화, 전시를 안내해주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돕기 위한 기능을 한다.

3)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5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는 친환경 농업교육을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농업인은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료 대신 쿠폰을 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05년에는 34개 시·군에서 3,900여 명의 농업인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협대, 충북대 등의 5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 제도는 2006년에 전국의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사업예산도 1억 5천 만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교육기관도 11개로 증가하여 피교육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07년에는 예산이 2006년도의 2배인 4억으로 증가하고, 농업인 9,00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기관도 13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과정도 기초, 중급, 심화반으로 구분하고 품목별, 농법별로 다양한 친환경 농업교육 과정이 개설되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가 정한 교육비 기본단가에 의해 정해지며,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비용이 다르므로 추가비용은 피교육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2007년의 경우 교육일수에 따라 1일 교육 32,000원, 2일 교육 79,000원, 3일 교육은 126,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이 지급되었다.

1) 지역순회 문화프로그램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으로, 2004년에는 64개의 문화예술단체, 2005년에는 110개의 문화예술단체, 2006년에는 215개 단체, 2007년에는 194개, 2008년에는 129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지역적 또는 계층적으로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친환경 농업부서에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농림부와 시·군은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의 신청결과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한다.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농업인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일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공급자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공급자 집단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병행하여 양질의 농업교육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유한욱, 2006).

3. 육아지원 바우처²⁾

정부에서는 현재 미취학 아동에 대한 주요 육아지원 서비스인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현재의 기관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묵시적 바우처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직접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명시적 바우처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복지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복지적 측면이 강한 단계에서는 묵시적 바우처를 사용하지만 선택적 측면이 증가하면 명시적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진, 2007).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각각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포털이라는 통합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은 보육 행정체계의 개편 및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한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앞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편의성 증진과 유아학비와 보육료의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와 보육 전자바우처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각 부처에서 별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다. 제도 정착 이후, 보육 전자바우처와 육

2) 본 절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제안서 등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시스템 간 연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배경 및 운영계획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가. i-사랑카드

1) 도입배경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 수요가 급증하였다. 지난 2,000년 68만 6천명이었던 어린이집 아동은 2007년 1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표 II-3-1> 참조), 2003년 이후 지난 5년간 보육예산은 4.7 배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육예산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도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 등의 행정업무 과다로 서비스 향상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제의 생산 및 관리 업무가 과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모와 시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i-사랑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묵시적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었던 보육서비스 지원이 명시적 바우처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기존의 e-보육행정 업무를 포괄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관리 및 보육행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표 II-3-1> 만5세 이하 아동분포 현황

구분	소관부처	연령	아동수 (만명)	%	비고
계			283	100%	
어린이집	보건복지가족부	0~5세	104	37%	*만6세 이상을 포함할 경우 110만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3~5세	53	19%	
미이용 아동		0~5세	126	44%	

자료: i-사랑카드 사업 수행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제안서, www.mw.or.kr

2) 현행 보육행정 체계

가) 보육료 지원 현황

i-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의 전달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일 뿐, 보육료 지원기준 및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정부에서는 i-사랑카드의 도입과 발맞추어,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그 이상 계층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영아기기본보조금은 영아(만0세~2세)를 대상으로 소득구분 없이 연령별로 지원한다. 2008년도 보육료 예산은 다음 <표 II-3-2>와 같다.

<표 II-3-2> 2008년 보육예산

단위: 억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주요내역	
계	29,623	14,179	15,444		
보 육 료	소계	22,085	10,627	11,458	
	▪ 영아기기본보조금	5,007	2,298	2,709	· 0-2세 기본보조금 지원
	▪ 유아기기본보조금	250	250	-	· 3-5세 기본보조금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16,828	8,079	8,749	· 차등보육료, 5세아·두자녀·장애아보육료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6,583	2,993	3,590	· 정부지원시설 등 인건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477	240	237	· 보육시설 확충, 환경 개선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303	144	159	
▪ 기타(비사업 등)	175	175	-		

※ 보육료 중 정부지원금 매칭 부모부담금은 별도

자료: i-사랑카드 사업 수행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제안서. www.mw.or.kr

보육료 상한선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므로 영유아의 연령 및 소득구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지급된다. 영아는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전국이 동일하고,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동일하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시도별로 상이하다. 국공립·법인·전담지정시설은 정부에서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수입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료 신청 및 지급 절차

현행 보육행정 체계 하에서 아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1) 보육료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부모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급여(보육료 지원금)를 신청

(2) 급여신청 결과 통보

- 주민센터에서는 소득·재산을 확인 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영유아(1~5층) 보장구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안내문 발송

(3) 부모부담금 납부

- 부모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보육료와 정부지원금의 차액분(부모부담금)을 어린이집에 납부

(4)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급

-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
- 지자체는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
 - ※ 보육료 신청에서 지급까지 대략 15일 정도 소요

다) 보육행정정보화 현황(e-보육)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어린이집 간의 보조금 지급, 아동·종사자 관리 등 보육행정 지원을 위한 e-보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보육은 어린이집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어린이집 지원기능: 시설·반 정보, 원아·종사자 관리, 보조금신청 및 회계 관리, 어린이집,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가족부간 업무 연락
- 행정기관 지원기능: 어린이집관리(인허가 등), 원아·종사자(임면), 교사대 아

동 비율 관리, 보조금 접수·승인·반려·정산 처리, 어린이집 회계보고 관리, 보육통계 관리, 보조금지원 사업관리

한편 e-보육은 다음과 같은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운영된다.

-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복지업무)·주민등록전산시스템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보육자격관리시스템
- 농림수산물부 AgriX 시스템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민간 회계개발업체 실시간 연계
- 행정안전부(구 정보통신부) 모바일(SMS)시스템

3) i-사랑카드 도입계획

가) i-사랑카드의 특징

i-사랑카드는 기존에 부모에게 지원하던 보육료와 시설에 지원하던 기본보조금을 일원화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i-사랑카드를 사용한다.



[그림 II-3-1] 보조금 통합지원(만0세아)

나) 보육료 지원신청 및 i-사랑카드 발급

2009년에는 i-사랑카드의 도입과 더불어,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보육료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 - 부모

- 영유아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서(카드발급 신청서) 또는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판정 - 시군구

- 자산조사: 주민센터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그 내용을 시군구에 보고
- 등급판정: 시군구는 자격등급을 확정하고 자격정보를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자격내용을 보육료지원 대상자, 양육수당 지원대상자(통장번호 포함)로 구분하여 바우처 관리센터로 통보
- ※ 통보할 내용: 1~5층, 일반, 장애등급, 희망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 시군구는 보육료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국비·지방비)을 바우처 관리센터에 위탁
- 부모통보: 시군구는 영유아 부모에게 자격결정내용 및 보육료 지원내용을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

(3) 카드발급 및 단말기 보급 - 금융기관

- 카드발급 의뢰: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취합된 카드신청서를 금융기관으로 보내 i-사랑카드 발급 의뢰(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발급에 필요한 정보만 전송)
- 카드발급: 금융기관은 영유아 부모가 신청한 카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 등으로 부모에게 발송(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영유아 부모에게는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발급)
- 단말기 설치: 금융기관은 사업시행 1개월 전까지 i-사랑카드 대상 어린이집에 단말기 및 부속장비를 설치하고 시범작동

(4) 보육료 카드결제 - 부모

- 결제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 단 농어촌, 장애부모 등 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하여 ARS, 인터넷 결제 등의 방법을 보완
- 결제금액: 아동보육시간유형(종일·시간제 등), 보육료 감면기준, 출석일수, 나이, 출생순위, 부모부담금을 자동계산
- 표시방식: 정부지원시설 및 미지원시설이 동일금액으로 결제표시(단 정부지원시설은 이후 금융기관에서 인건비·운영비 부분을 제외한 후 자금이체)

(5) 보육료 지급·정산 - 금융기관·바우처관리센터

- 보육료 지급: 금융기관에서는 결제 후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합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 보육료 정산: 금융기관은 지급내역을 바우처관리센터에 송부하고 정부지원금 및 지방사업비를 청구

한편 i-사랑카드의 도입을 앞두고, 기존의 e-보육시스템은 폐지되고 e-보육의 내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2009년 2월 완료예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e-보육에서 다루었던 어린이집 지원시스템과 행정기관 지원시스템을 포함, 부모 지원시스템과 바우처 관리시스템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다) 향후 추진계획

i-사랑카드 제도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테스트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전자바우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향후 전자바우처 도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i-사랑카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이용권 지급대상 부모 및 어린이집 등의 i-사랑카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통상의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발급 및 단말기 등 이용권 처리기반 구축시 부모·어린이집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육정책 및 i-사랑카드의 현장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정책 또는 제도 변화에 따라 확장성이

편리하도록 설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영으로 불편사항·기능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시스템 오류 및 부하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심하고 i-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아동정보 보유금지 및 각 관계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및 보안 관리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요구조건 충족, 바우처관리센터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i-사랑카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게 부모, 어린이집, 행정기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카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지급됨으로써,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제고되고 시설과의 소통 증진으로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시 감면 서류 등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육료 납부수단의 다양화(카드, 인터넷뱅킹, ARS 등)로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며,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검색기능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보육료 신청, 정산 등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 경감되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료 입금에 소요되던 기간이 기존의 15일 정도에서 5일 이내로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도 보육료 승인, 지급,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과 민원부담이 감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계보고 및 보육료지원 아동·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이다.

나.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1) 도입배경

정부는 유아교육의 중기 발전 전략 및 추진과제로 ‘아이 즐거운 유치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유치원 서비스 향상, 저소득층 유아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 선진 유아교육 기반마련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의 하나로, 탄탄한 유아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은 이러한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의 추진배경을 바탕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치원 및 유아교육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관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중심의 단선형 전달체계에서 학부모와 유치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둘째는 유아교육 지원 예산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유아학비 지원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수작업 방식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중복지원, 유치원과 학부모 간 담합 등으로 인한 예산 누수 등 각종 낭비적 요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육아부분 재정 지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현행 유아학비 지원 제도

가) 유아학비 지원현황

국가 인정자원의 조기 개발 및 저소득층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1999년 농어촌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

여, 2001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저소득층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2004년)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차등지원(2005)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유아학비 지원 현황은 다음 <표 II-3-3>과 같다.

<표 II-3-3> 유아학비 지원 현황(결산기준)

단위 : 억 원, 명

	2004	2005	2006	2007
지 원 액	792	1,860	2,904	3,413
지원인원	88,158	158,794	229,086	273,823

나) 유아학비 신청 및 지급절차

현행 유아학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 부모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2)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는 소득계층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 확인서 발급은 평균 20일 이상 소요

(3) 유치원 등록 및 학비 선납

- 소득계층 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 부모는 지원금이 환급되기까지 학비 전액 납입(환급은 2~3월 소요)

(4) 지원금 신청 및 환급

- 유치원은 확인서를 수합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
- ※ 유치원은 분기 1회 지역교육청에 학비 지원금 신청
- 지역 교육청은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예정액 확인 후 시·도 교육청에 제출
-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급, 유치원은 지급받은 학비를 부모에게 환급

3) 전자카드제 도입계획

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특징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종이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 이용 권한이 설정된 전자카드를 유아학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는 선택한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지원된 유아학비를 현금 대신 직접 사용하게 된다. 단, 지원 금액(수업료) 이외의 추가 소요 경비(급식비, 종일반 이용비 등)는 부모가 별도로 지불한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앞서 살펴본 i-사랑카드와 달리, 개인인증카드 기능만을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경우, 유치원의 수수료 등 추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전담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과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인증카드 기능만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개인 인증만 보유한 학비 전용카드로서 아동의 기관 이용을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계좌이체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나) 유아학비 지원신청 및 전자카드 발급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센터-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평가를 통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 적격으로 확인된 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확인서 발급 불요)
- 대상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은 시군구청정보시스템인 「서울행정시스템」 활용, 유아학비 지원 관련 콘텐츠 추가

(2) 금융기관-「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및 배송

- 부모의 전자카드 발급 신청→금융기관은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적격 여부 확인→카드 발급
- ※ 부모의 선택에 따라 카드 내에 금융거래 기능(체크카드 등) 포함 가능

- 발급된 전자카드는 부모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재택 배송

(3) 유치원-유아학비 납부 및 결제금액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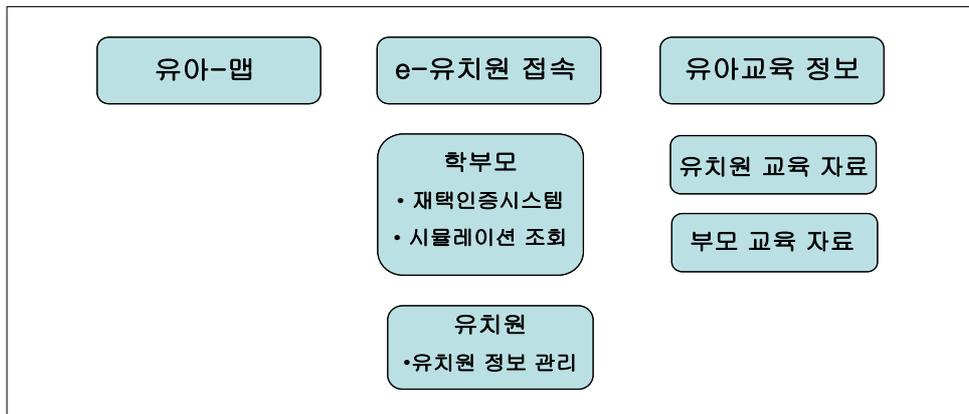
- 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납부
- 전자카드제 보완을 위한 재택 인증 시스템 도입: 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택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 통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유치원 방문에 따른 낙인 효과 등 방지 효과
- 결제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의 결제금액 자동 청구
- 카드 발급 지연의 경우, 납부된 유치원비 환급
(주민자치센터의 대상자 확인에 평균 20일 소요)

(4) 교육청 및 금융기관-지원금 지급·정산

- 시·도 교육청은 결제 청구 정보 확인 및 지급 명령
- 금융기관은 유치원에 지원금 송금 및 정산

다) e-유치원 시스템 구축

정부에서는 전자카드제 지원을 위해 금융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행정기관,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통합전산시스템인 e-유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유치원 시스템은 유아-맵, 유아교육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유아포탈의 구성은 다음 <그림 II-3-2>와 같다.



[그림 II-3-2] 유아포탈 개념도

한편, 전자카드제 지원을 위한 e-유치원 시스템의 구축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구축 방향

- 모든 참여자들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web) 방식 적용
- 전자카드제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공유
- 개인 정보는 전자카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로 제한,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 유치원 입력 기본 정보는 부모의 유치원 선택을 위한 유아-맵(map) 기본 자료로 활용

(2) 서버 구축·운영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 DB는 교육과학기술부(NEIS 서버 분할 사용),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금융기관 단위로 자체 구축·운영(<표 II-3-4> 참조)
- 각 DB는 연계망을 통해 정보 공유
- 유아학비 지원 응용 S/W 개발: 교육청, 유치원 등의 유아학비 지원 관리·운영 및 부모의 웹 기반 인증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금융기관에서 개발·보급)

<표 II-3-4> e-유치원 시스템 참여 주체별 구축 DB

주 체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관련통계 DB, 유치원관련통계 DB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유아 및 유치원 DB, 바우처 DB
주민 센터	확인서 발급 DB
금융 기관	청구·지급 내역 DB, 카드발급 DB

라) 향후 추진계획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2008년 10월~2009년 8월

- 1기 시범운영(2009년 3월~5월): 지역 교육청 중 3곳
- 2기 시범운영(2009년 6월~8월): 시·도 교육청 중 1곳 선정하여 시행

(2) 시스템 교육 및 홍보: 2009년 6월~2009년 8월

-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유치원, 주민센터 등 업무 담당자 교육
- 부모용 홍보물 제작·배포(유치원, 주민센터 비치)

(3) 전자카드제 시행 : 2009년 9월

- 유치원 학기(3, 9월 학기제)에 맞춰 9월부터 전면 도입

4) 기대효과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가 향상되고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부모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재택인증시스템의 도입으로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인증이 가능해짐으로써 편의성이 향상된다.

둘째, 전산화를 통해 재정흐름이 투명해짐으로써,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통합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유아교육 현황 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진다.

넷째, 유치원 및 교육청의 행정 업무가 경감된다.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서류 확인절차 및 업무의 중복이 사라지므로, 업무상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Ⅲ. 주요 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이미 각종 바우처 제도를 도입·운영하였고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전자결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 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특징과 제도운영 방식을 고찰하였다.

1. 미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가. 육아지원 바우처 특징

연방정부의 육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역사회의 육아프로그램이나 헤드스타트, 가정 내 데이케어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후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에 육아와 관련하여 아동이 있는 가족지원/직업기회와 숙련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 AFDC/JOBS) 기금 등이 제도화되면서 바우처 지급방식이 확산되고 있다³⁾.

2008년 현재는 연방정부의 보건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가족지원국(Office of Family Assistance)이 관리하는 '육아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이 보육 바우처의 중심에 있다. '육아발전기금'은 1996년에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회복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과 더불어 설치되었는데, 저소득 가족과 일시적인 공적 부조를 받는 가족 및 교육훈련이나 취업을 위해 육아관련 공적지원을 받는 가족에게 지원된다. 즉, 저소득 가족의 육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3) Salamon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미국 연방 정부의 바우처 프로그램 예산규모는 343억 달러인데, 이중 푸드 스탬프 사업(Food Stamp Program)에 212억 달러, 대학생에 대한 교육보조금(Federal Pell Grants)으로 79억 달러, 여성·영유아에 대한 음식제공사업(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에 40억 달러, 어린이보호 및 발전보조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Block Grant)에 12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해서, 연방정부는 '육아발전기금'(CCDF)를 통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육아발전기금'과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acf.hhs.gov).

대다수의 주정부들은 육아지원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발전기금'과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이용한다. 각 주와 지방정부는 '육아발전기금'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육아발전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다.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바우처 금액규모 및 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권한을 갖는다. 이런 원칙하에 바우처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와서 일선행정기관에 배정되며, 구체적인 지급기능은 주·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성과 기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reimburse) 결정, 바우처 제공기관 및 수요자 범위의 구체적 설정 등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특히 일선행정기관에서 주요한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기능이다. 서비스 제공과 대가에 대한 지급이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공급 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약 관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각각의 주·지방정부는 관리기구(Lead Agency)를 지정해야 하는데, 관리기구는 자금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의 책임이 있다. 먼저,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주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state-funded prekindergarten)과 사적 영역에서 출연한 펀드를 모두 포괄하는 '육아발전기금'을 통해 육아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아발전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 및 관련 기금과 더불어 주정부, 미국령 영토 거주자, 원주민들에게 매년 1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제공한다. 저소득 가정, 일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일을 하거나 훈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을 통해 약 240만의 아동들이 육아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관리란 '육아발전기금'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준수를 관리하고 관리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육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제공의 범위에는 지원 자격 결정, 수당 제공자와 부적격 수급자를 감소시키는 정책 등과 같은 육아서비스 수행에 대한 제반의 정보들이다. 이와 같은 관리를 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다른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바우처나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육아발전

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정도의 주 및 지방정부는 육아 관련 비정부기구(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CCR&R) agencies)와 연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17개 주에서 4세 이하 아동의 교육기회를 늘이기 위해서 학교와 육아제공자, 헤드스 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s)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도 한다(CCDF, 2008).

나. 바우처 제도 운영 방식

1) 바우처 지급체계(Certificate Payment System)

미국의 바우처 지급체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수단의 하나는 수요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육 바우처(child care vouchers)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 바우처 형태로 지방정부와 육아지원기관 간의 약정(contacts) 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먼저, 바우처 방식은 부모가 바우처(몇 개의 주에서는 certificate라고 불린다)를 받고 서비스 공급 자격이 있는 제공자들 중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제공자에는 시설 보육뿐만 아니라 가정내 보육, 친인척에 의한 보육, 이웃에 의한 보육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약정(contacts) 방식이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보육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개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자는 보육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가정 보육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주마다 계약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대개 특정 기간(대개 1년) 동안 특정수의 아동을 보육할 경우 일정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기본 방법으로 한다.

바우처와 약정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우처를 지급받은 가족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제공자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반면 '약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가족들은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육아제공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받는 부모가 계약이 체결된 공급자를 떠나면, 공급자는 또 다른 보조금 수급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바우처가 선택권을 크게 신장시켰다면, 계약은 일정 기간 공급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급자가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http://www.urban.org>).

먼저, 주 및 지방정부들은 육아지원 보조금에 대한 증서를 발급하는데, 바우처, 지불보증서 등 양식은 다양하다. 29개 주에서는 육아공급자가 선택되기 이전에 자

격에 관련된 증서를 발급한다. 이런 주들에서, 육아 증서는 유동성이 높는데, 부모들은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육아공급자들 중에서 육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발급된 증서는 육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일일·주당 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금액을 표시한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전달체계를 가진 주에서 부모들은 주어진 시간안에 적절한 육아 공급자를 찾고 이를 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육아 공급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증서 사본을 관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육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가정이다. 2순위는 1인당 소득이 최저에 속하는 가정이다. 육아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 가정은 수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계속 수혜자가 된다. 이때 가구 소득은 캘리포니아 주 중위 소득의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아 증서(certificate)에는 부모, 아동, 육아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자의 요율이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지원 금액, 유효 기간이 기재되며,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제공한 육아 서비스의 가격이 기재되며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현금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표 III-1-1>바우처 발급 정책 유형- 미국

범주	시행 주(State/Territory)	계
증서 수혜 후, 서비스 제공자 선택하는 주	Alabama,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Guam, Iowa, Idaho, Indian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ississippi, North Carolina, New Jersey, New Hampshire, New York, Ohi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West Virginia	29
서비스 제공자 선정 후, 증서 발급하는 주	Alaska, Arkansas, American Samoa, Arizona,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Hawaii, Illinois, Massachusetts, Maine,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Utah, Virginia, Virgin Islands, Vermont, Wisconsin, Wyoming, Montana, Nebraska, New Mexico, Nevada,	26

자료: CCDF, 2008, Report of State and Territory Plans FY 2008 - 2009

다음으로, 다른 26개 주·지방에서 부모들은 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육아서비스

제공자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들 주에서 증서는 이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특정 공급자와 연결되어 있다. 증서에 포함된 정보는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서비스 시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급율과 부모부담 비용 및 육아 공급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관리기구는 등록서류 또는 공급계약서 형태의 증서를 활용한다.

2) 전자바우처 : 아동 양육 보육비 지원(CSE) 프로그램

전자정부(e-government) 활성화 촉진 법령의 통과와 더불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들은 전자 상거래 기능을 정부 서비스 제공 부문에 널리 적용해 나가고 있다. 개별 주·지방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전자지불방식(Electronic Funds Transfer, EFT)을 활용하고 있으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신용카드(credit card)와 직불카드(debit card)를 통한 전자바우처를 보급하는 것이다(EFTA, 2006). 물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국의 금융거래 특성상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혜택 등에 대해서는 각주의 사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수표로 지급할 수 있는 재량도 함께 부여하였다⁴⁾.

전자지불방식(EBT) 방식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 양육 지원(Child Support Enforcement : CSE) 프로그램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생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친자의 보육비 보조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생부에게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월 일정액의 보육비를 주 정부 기관(Child Support Agency)에 납부하도록 강제 명령하는 프로그램이다. 생부는 보통 아이가 만 21세 때까지 보육비를 아동관련 주정부 기관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주 정부는 생부로부터 받은 보육비를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생모나 기타 법률적인 후견인에게 매월 송금(주로 direct deposit)한다. 주 정부의 행정기관은 생부로부터 효과적으로 아동 보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생부가 다니는 직장 고

4)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1996)과 함께 통과된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DCIA)는 종이 쿠폰 방식으로 지급되던 푸드 스탬프 사업을 2002년까지 전자지불방식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해주는 주 정부 시행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혜택들도 적절한 시일 내에 전자결제 방식을 통하여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권장하였다. DCIA는 각종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의 집행비용을 절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통과된 법령으로 연방정부가 개인들에게 지불하는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1999년까지 1월까지 전자결제방식을 통하여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법을 통과하면서 예외조항을 주어 기존의 정부 수표를 통하여 연방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수표를 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용주로 하여금 생부 월급의 일부를 아동관련 주정부 기관에 매달 또는 격주간격으로 입금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아동양육비는 생부에게서 보통 격주나 한 달 간격으로 아동 지원금을 거두어 생모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건의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 특성상 주정부들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로 전자 결제방식을 사용한다. 미국 전역에 걸쳐 2005년 한해에 아동 양육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약 1,590만 건수에 230억 달러를 거두어 집행하였다(EFTA, 2006).

인디애나 주에서는 2003년부터 종이 수표 방식으로 지급하던 아동양육비 지원(Child Support Enhancement, CSE) 프로그램을 전자지불방식(EBT)으로 전환하였다. 아동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가 여타의 다른 바우처 중복 수혜자일 경우 대상자들은 여러 개의 계좌가 포함된 한 개의 카드를 지급받는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혜자들은 주소지 지방관서(대개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부서의 산하기관인 가족과 아동과(Division of Family and Children))에 가서 45-55분간 실시되는 카드 사용법 교육에 참석을 해야 하며 교육장에서 네 자리 숫자의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발급받는다. 카드 전면에는 수혜자 이름이 있고,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대리인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 분실시에는 Help Desk로 연락해야 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에는 2달러의 수수료를 수혜자의 카드 잔액에서 공제한다(배득중 외, 2008).

전자지불방식(EBT)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들에서, 주 관계기관은 수혜자 자격기준, 혜택의 수준 등을 결정하고 실제 제도 운영을 금융기관에 외주를 주는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외주 계약 또는 고용된 금융기관은 전산기계 관리, 가맹점에 대금 결제, 거래 당사자들 간(은행, 가맹 소매상, 전자지불방식(EBT) 기기 설치업자 등)에 분쟁이 발생할 때 중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주정부는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3-5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금융기관과 계약한다. 그런 점에서, 전자지불방식 운영 과정 주요 당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주관 정부기관(social service agency), 금융기관(EBT processor), 가맹 소매상(authorized retailer), 전자지불방식(EBT) 시설설치 및 관리업자(Merchant Acquirer), 결제은행(concentrated bank)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전자결제 카드를 제작하고 관리, 수혜자들 계좌 개설, 가맹 소매상들과 전자결제 터미널 관리 및 이들에 대한 대금 결제, 고객 서비스 제공, 거래들을 처리, 분쟁해결, 주 정부기관에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전자결제 시스템 보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전자결제 업무를 실제로 주관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맹 소

매상들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대금을 소매상들의 계좌에 보통 당일 전자결제 한다. 전자결제 시설설치 및 관리업자는 전자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전자지불방식(EBT) 방식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푸드 스탬프 사업의 경우가맹 소매상들(retailer)은 수혜자들이 식품 구입시 수혜자들에게 물품 가격만 청구하고 별도로 단말기 이용 등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주정부가 가맹 소매상들에게 전자결제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기 때문이다. 단말기 기기와 기기 설치 비용은 보통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한다.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금융망 사용에 대해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로 금융기관에게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이들은 이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전자바우처가 비용 효율성을 낳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인디애나 주의 아동 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한 비용 분석에서는 전자지불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간 약4%의 관리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용절감이 된 부분은 첫째, 주 정부가 발행한 수표가 수혜자의 주소 등의 이전으로 다시 주정부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추가발송해야 하는 비용, 둘째, 수혜자들이 상인들에게 제출한 수표가 잘못되어 금융기관으로 보내진 수표에 대해서 주정부가 금융기관에 물어야 하는 벌금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다(Pirog, M. A & Johnson, C. L., 2007).

반면, 초기 계약권을 따낸 막대한 자금력과 전산망을 갖춘 전자결제 업자들은 정부 서비스 전달부문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수 전자결제 관리회사들은 상당 부분의 전자결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여러 개 주에서 전자결제 사업을 확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과점을 형성하여 초기의 막대한 자본설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결제 시장은 공급자간 경쟁 부족으로 인하여 주 정부들에게는 전자결제 관리 비용 가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 비용의 증가는 주정부와 정부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EFTA, 2006)

2.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가. 육아지원 바우처 특징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는 1995년 교육고용성(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 의해 제안된 유아교육 바우처(nursery education voucher)가 1997년 상반기에 실시되었고, 1999년에 종이바우처(paper voucher) 형태의 보육 바우처가 실시된 후 2004년 전자바우처 제도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영국의 노동시장에 기혼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나, 취업모 급증으로 아동 교육·보육에 대한 수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영국 교육청은 1980년대부터 4세아의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공립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을 때의 필요한 예산은 30명 정원의 1개 반을 보육시설에 증설하는데 약 5만 파운드(약 1억원)로 추산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최봉섭, 2006). 따라서 4세아 무상교육 실행여부는 전국 150개 지역교육청에 맡겨져 있었고, 시설의 공급이나 운영 형태도 지역별 차이가 많았다(신은수, 2007). 공립 기관보다는 민간 유아교육·보육 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민간 시장에서는 보모(childminder), 사설 놀이방(play group), 교회 혹은 공공건물의 비영리 놀이방(play center), 사설 보육시설(private nursery)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었다(최봉섭, 2006).

정부는 1995년 7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4세아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정부가 발표한 시한에 맞춰 공립 유아학교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재원과 시설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보육서비스를 구매하여 어머니들에게 분배해 주어 양질의 취학전 교육에 대한 시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 영역의 시설 투자는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고(최봉섭, 2006), 그 결과로 1996년 유아교육 바우처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⁵⁾. 특히 당시 민간 시설은 형태, 시간, 연령, 조건, 비용, 가격 등의 편차가 커서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

5) 유아교육 바우처는 보수당 정부 말기의 '4세아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전국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확대 법령(Nursery Education and Grant-Maintained School Education Act)'을 근거로 실시되었다.

하고자 하더라도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단일화하거나 규격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우처’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 바우처는 의무 취학 연령인 만 5세의 직전 연령인 4세아의 부모에게 1년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1100 파운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부모는 바우처를 받아 공립·민간 기관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공립유아학교는 바우처 외에 부모로부터 별도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게 했으나, 연간 1100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받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와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지불하게 하였다(홍금자, 2008).

1996년부터 1년간 바우처 시범 도입 지역이었던 4개의 대상 지역에서는 바우처 지원 대상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바우처가 지급되었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커리큘럼 등 바우처 이용 가능 시설이 되기 위한 인증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반면, 유아교육 바우처의 금액상의 불충분으로 인해 교육·보육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의 추가 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에 편입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한 감사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웠으므로, 그러한 일부 시설들은 정부의 바우처 제도에 편입되기를 꺼려해 민간 참가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놀이집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공급의 다양화나 선택권의 확대를 저해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교육청은 공립유아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시설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립유아학교에서 4세아 교육을 전담하도록 해야 했지만, 지방교육청에 따라서는 민간영역에서 수요가 충족될 경우 더 이상 공립유아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민간시설에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만 4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었다(유한욱, 2006)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결국 보수당에서 1997년 7월 노동당에의 정권 이양과 함께, 본격 실시 6개월 만에 시행이 철회되게 되었다. 1997년 국가아동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의 수립으로 보육 재정 증대와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서비스 비중이 높고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영리 부문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의 형태로 중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이후, 1999년에 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일하는 부모가 소득세(Income Tax)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내기 전에 보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세금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동 양육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양육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제도로 고안되었다. 이와 같은 보육 바우처 제도의 설계는 기업이 근로자 급여 중 일정 부분을 보육 바우처로 제공(salary sacrifice)하고, 바우처로 제공된 급여 부분만큼 소득세와 국민보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근로 유인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고용주에게는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준다.

영국에서 아동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계 지출 중 두 번째로 큰 지출액을 차지하는데, 대개 맞벌이 부부는 수입의 10-20%를 보육비로 지출한다. 이처럼 가계지출 중 보육비용이 차지하는 액수가 큰 이유 때문에, 가계 재정 차원에서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생겨났다.⁶⁾ 그런 점에서 일하는 부모들에게 보육 바우처는 상당부분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는데, 2008년 현재 보육 바우처 공제액이 주당 55파운드(월 243파운드)정도로, 일하는 부모들은 상당량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절세할 수 있다. 20%의 납세자의 경우 연간 최고 903.96파운드까지, 40%의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195.56파운드까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 보육 바우처는 16세 아동까지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Care), 놀이 학교(Play School), 방과후 클럽(After School Clubs), 유아클럽(Pre-School Clubs), 보모(Childminders), 오페어(Au Pairs)와 기타 바우처 운영기관에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바우처 제도 운영 방식

영국의 보육 바우처는 2003년 전자 보육 바우처(Childcare vouchers direct)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보육 바우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실시하였다.

영국의 보육 바우처 체계에서 정부는 바우처 구매 대상인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바우처 구매를 촉진한다. 그리고, 전자 보육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기관⁷⁾들을

6) <http://parentshut.com/> 검색일: 2009년 1월

7) 영국의 보육 바우처 제공기관을 승인하는 기관은 OFSTED Childcare Register가 있고, 북아일

설치하고 운영한다. 영국의 공식적인 승인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OFSTED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만이 구매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품질저하 현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하였다.

OFSTED 영국 전역에 있는 5만 여개의 교육 및 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3곳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고, 조사업무를 위하여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1,100여명의 조사자들과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 육아지원기관과 관련해서는 보모서비스(childminders), 탁아서비스(full and essential daycare providers), 보육원(creches), 가족센터(family centers, home for children),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등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이영범, 2008)

OFSTED가 서비스 품질관리 기관이라면, 공급자 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공급자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급자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바우처 운영과 관련하여 바우처 판매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한 민관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에 대한 관리 업무 및 품질 통제 업무도 공공기관인 OFSTED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전자보육 바우처는 바우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고용주 및 피고용인)과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바우처 판매관리 기관 및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보육 바우처 구매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바우처는 아코르 서비스(Accor Service)⁸⁾와 같은 바우처 판매 관리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구매자는 바우처 판매 관리 기관에서 전자바우처를 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판매관리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대금을 정산하고 지급받는다.

영국에서 제1의 바우처 판매 관리 기관은 아코르 서비스인데, 이들은 보육 제공업자들을 위해 무료로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들이 개인의 지불내역을 게재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우편이나 온라인을 이용하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송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있다. 대금 지급

랜드는 Local Health and Social Services Trusts, 스코틀랜드는 The Care Commission이 있다.

8) 아코르 서비스(Accor Service)는 아코르그룹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적 조직이고 근로자나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1954년에 최초로 Luncheon voucher company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 35개국 2,300만 명의 수혜자에게 30만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는 보육 제공업자에게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s)와 수표 중 편리한 지불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별 지불 내역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http://www.childcarevouchers.co.uk/>).

아코르 서비스는 근로자가 '기업이 근로자 급여 중 일정 부분을 보육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salary sacrifice)'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면 온라인 등록을 하고 회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전자 보육 바우처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한다.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월 임금 중 보육 바우처 제공액 목록 및 급여산정과 지급명세서를 송부한다. 근로자는 등록 후, 보육 제공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보육 바우처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보육 바우처를 받게 된다. 이 때, 바우처는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데, 아코르 서비스와 협약된 보육 바우처 제공 업체 중 편리한 제공업체를 선택하고 종이바우처를 선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제공업체에 종이바우처를 제시하면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바우처가 전환되어서 전자결제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제공업체에 송금이 이루어진다. 전자보육 바우처의 경우 근로자가 개별 온라인 보육 바우처 계정을 통해서 지불하면 자동으로 보육 바우처 제공 업체 계정에 접수되어 제공업체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비용을 지불받는다.

3.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가. 육아지원 바우처 특징

호주는 육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육아지원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s, CCB)으로 보육 급여를 일원화하였다.

보육지원금은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차등 지급되며, 인가를 받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한 개인 탁아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사정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정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종일 보육, 가정보육, 방문보육(in-home care), 방과후 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한다. 인정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낼 경우에만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은 아동이 부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보육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 개인이 가족지원실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 등록보육은 민간 preschool이나 유치원 등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보호자는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20시간, 50시간, 또는 50시간 이상의 보육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단 보육료를 지불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비 세금 환불(Child Care Tax Rebate)을 통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정한 심사조건(직업, 연수, 학업 등)을 충족한 부모들에 대해 부모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CCB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세금해서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이렇듯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는 바우처의 유형 중 환급형(reimbursement) 바우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보육지원금은 센터링크(centerlink)⁹⁾라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지급된다. 센터링크는 2003년 이후부터 전국 1,000여개소의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고 가정방문, 대면 상담, 전화, 인터넷 등 서비스 수단을 다양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직통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네트워크 거점이란 센터링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화, 컴퓨터 등을 갖춘 파트너 기관들이다.

센터링크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일 경우, 자녀보육시설이나 부모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보육지원금(CCB)를 지급받고 싶을 때, 센터링크에 자녀의 연령과 특수한 조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고하면 소득수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보육지원금 액수를 알려준다.

9) 센터링크는 1997년에 설립되었는데, 연방정부 10개 부처와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각종 수당을 나누어주는 일부터 보육지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육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센터링크에 알려주면 보육지원비가 시설에 직접 지급되고 보육시설은 부모에게 청구할 전체 보육료에서 센터링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청구한다. 센터링크와 전국의 보육시설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보육시설은 분기별로 모든 아동에 대해서 시설이용 시간과 출석일수 및 결석 사유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http://www.centrelink.gov.au/>).

센터링크는 민간시설이 제공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도록 '연결'시킴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경우 영아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요구에 따라서 보육지원금(CCB) 제도를 수정하였으나 야간보육이나 주말 보육과 같은 특수한 요구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금 제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제도의 특성상, 호주에서는 야간보육이나 주말보육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었다(장지연, 2005).

나. 바우처 제도 운영 방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보육 바우처는 환급형 바우처에 해당한다. 본 절에서는 보육 바우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최근 호주의 주요 사회서비스에 도입 예정이었다가 전면 철회된 전자바우처인 액세스 카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의 전자바우처 도입계획 및 철회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마찬가지로 전자바우처 형태인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액세스 카드¹⁰⁾

호주에서 전자바우처의 관리·책임기관은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산하 액세스 카드 관리센터(The Office of Access Card)이다. 액세스 카드¹¹⁾는 전자바우처의 형

10) 본 절의 내용은 이재원(2008)과 액세스 카드의 내용과 도입 및 철회 배경에 대해 소개한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privacy.org.au/Campaigns/ID_cards/HSAC.html, [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http://en.wikipedia.org/wiki/Health_and_social_services_access_card_(Australia)), <http://www.efa.org.au/Issues/Privacy/accesscard.html> 등)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11) 도입이 무산된 액세스 카드에 대하여, 호주의 수상은 2006년 4월 26일, "호주 정부가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원칙적으로 새로운 액세스 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액세스 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4년 동안 10억 9백만 파운드의

태로 운영되는 전자식 카드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와는 별도로 사용되며, 카드는 오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액세스 카드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위한 비강제적인(non-compulsory) 전자카드로 호주의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나 원호행정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때는 누구나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2010년에는 그 범위를 의료보험국의 서비스에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기존의 수많은 카드들(의료보험 카드를 비롯하여 원호행정부에서 발급하는 수많은 복지카드(benefits card))을 액세스 카드로 통합, 대체할 예정이었다.

엑세스 카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호주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관리되는 복지 급여들: 실업급여, 장애수당, 퇴역군인 수당, 학비보조수당
- 건강보험카드(Health Care Card)와 고령자건강카드(Seniors Health Card)
- 국민의료보험(Medicare)의 지원을 받는 의료서비스
-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의약품급여제도(PBS)
- 호주 아동양육지원국(Child Support Agency Australia)¹²⁾의 서비스
- 호주 CRS의 직업재활서비스

엑세스 카드는 도난이나 분실 등을 우려하여 내부에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카드(smart card)’로, 카드가 데이터베이스에 든 기록과 카드를 연결시키는 번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실상 카드에 탑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자기카드(magnetic card)와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카드 리더기나 LCD

정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엑세스 카드와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www.accesscard.gov.au)를 개설하여 카드 시스템을 소개·홍보하였다. 호주 정부에서 2007년 ‘엑세스 카드 법안(access card bill):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2008년에 시범 실시하여, 2010년까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호주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 적용 예정이었다.

12) 호주 아동양육지원국은 별거 중인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자녀 부양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아동양육지원국에 등록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주고받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플레이어를 장착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어 카드 소유자의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통하여 승인·결제가 이루어진다. 자연재난이나 긴급 상황에는 직불카드와 같은 방법으로 긴급 지불번호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기금을 전환하여 긴급지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액세스 카드의 정보 업데이트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참여로 온라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전자식 카드 시스템에 의해서만 초기화된다.

엑세스 카드는 카드의 앞뒷면에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카드 소유자의 이름, 서명, 카드사용 만기일, ID 번호)가 일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카드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카드 리더기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 칩에 들어있는 정보 외에 법적 이름, 주소, 생일,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에 대한 상세정보, 디지털화된 사진, 서명, 카드번호, 카드사용 만기일, 성별, 개인식별번호(PIN) 등의 더욱 상세한 정보가 사회서비스부에서 구축한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칩은 암호화된 키와 개인의 비밀번호, 보안구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들은 개인식별번호(PIN)와 함께 보호될 것이며, 카드의 도용이나 정보를 해킹할 수 없도록 디지털 사인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엑세스 카드는 다음 두 가지 소프트웨어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카드관리시스템(CMS): 카드의 사용주기인 7년 동안 엑세스 카드를 관리·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 키관리시스템(KMS): 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

한편, 엑세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호주 국민이 정부 당국의 엄격한(즉, 침해적이고 번거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과정은 평균 12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계획된 인터뷰를 요구하며, 인터뷰 과정 중에는 인터뷰 대상자가 엑세스 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출생증명서나 신용카드, 각종 증명서등)를 확인하는 동시에, 카드발급 신청자의 생체인식 사진을 찍어 카드 앞면에 사용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인터뷰는 등록기간의 초기 2년 동안은 별도로 지정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에는 지정된 우체국을 통해 매7년마다 갱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엑세스 카드의 사용이 비강제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복지 및 의료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이 필수적으로,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액세스 카드에 대해서, 액세스 카드 관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액세스 카드의 계획과 평가는 사회서비스부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감사국, 내무부 등 다른 행정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카드 전달과 관련한 전략과 제안의 제공,
- 카드의 등록
- 지불 등 관리 수행
-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적 문제 대응 등

2) 전자카드 관련 쟁점

호주 정부는 액세스 카드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로 개발 및 도입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통과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액세스 카드 사업은 결국 전면 철회되었다. 액세스 카드의 핵심은 모든 호주 국민에게 소위 개인의 ‘공식 이름’ 혹은 ‘법적 이름’의 부여와 더불어, 각 개인의 고유한 등록번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액세스 카드는 1980년대 중반 도입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호주카드(Australia Card)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80년대 중반 밥 호크 노동당 정부가 신분증인 호주카드(Australia Card) 도입을 시도했을 때 존 하워드 현 수상을 포함한 자유당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해 무산된 바 있다. 호크정부는 호주카드 도입 대신 납세자번호(tax file number) 제도를 도입했고 하워드 정부는 이를 확대했다.

액세스 카드는 ID 카드가 아니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액세스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액세스 카드의 도입 결정을 발표한 이후, 두 명의 고참 사업관리자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책무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논평가들과 전문가, 신문편집자들이 액세스 카드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및 정부의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기사와 논평을 발표했다(www.efa.org.au/Issues/Privacy/accesscard.html).

2006년 5월 24일, 소비자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조사단(A Consumer and

Privacy Task Force)이 발족되었다. 사생활 보호의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이슈 페이퍼가 2006년 6월 발간되었으며, 2006년 9월에는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2006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26개의 대정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었는데, 정부는 정책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했다.

엑세스 카드 제도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2007년 개정된 사회서비스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관련된 법)이다. 이 법안은 2006년 12월 13일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을 제공하여 4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사소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법안은 상정되어 2007년 2월 8일 상원의 심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심의는 상원 재정 및 공공행정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위 상임위원회는 6주 동안 제안을 요청하고 진술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07년 3월 15일자로 발표된 보고서는 법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즉, 법안의 철회와 주요 규정에 대한 재고를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감시 및 사생활보호 규정이 한 묶음으로 법안에 같이 규정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장관이자 상원의원인 크리스 엘리슨(Chris Ellison)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안을 철회하였다.

엑세스 카드는 국가신분등록부를 물리적으로 형태화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가지 정보를 담게 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은 법안에 규정된 금지규정들과 1988년의 호주 연방 사생활보호법(Commonwealth Privacy Act)에 의해 이러한 정보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3월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호주 안전정보부(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와 호주 연방 경찰은 영장 없이도 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호주 은행협회도 새로운 고객의 신상정보 확인을 위하여 위 데이터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전자카드의 사용에 따른 정부의 통제 강화와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는 보류되었고, 이 시기동안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다.

4월 27일에는 사회서비스부의 장관이었던 패트리샤 스콧(Patritia Scott)이 경질되었는데, 이것은 엑세스 카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상이 주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2007년 6월 4일과 5일,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엑세스 카드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를 2007년 말에 계획된 연방 선거 이후로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들은 이것이 엑세스 카드 사업의 철회 내지는 적어도

주요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였다.

결국 2007년 11월 24일,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2007년 12월 7일, 액세스 카드 사업은 완전히 철회되었고, 액세스 카드의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던 액세스 카드 관리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모두 폐쇄되었다. 노동당은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액세스 카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액세스 카드의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해왔다. 2007년 10월, 노동당 정부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엑세스 카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엑세스 카드는 몇 가지 사회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서비스에 통합 적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액세스 카드 도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액세스 카드 도입을 발표한 직후,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액세스 카드 도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의 서비스에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강제적인 ID 카드의 도입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액세스 카드를 대신하여, 복지직불카드(welfare debit card)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직불카드를 위해 책정된 정부 예산은 3년간 3,640만 달러이다.

4. 소결 : 국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세 국가의 사례들을 통하여 국내 육아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률적인 역할분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바우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결정권은 바우처 제도의 운영에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바우처 규모와 배정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바우처 제도의 구체적인 수단은 주·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육아관련 보조금은 수요자 선택권을 강조한 직접 바우처 지급과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는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바우처 제도가 재

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모두를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법이라는 점에서 개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코르 서비스 등 민간을 적극 끌어들이면서도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켜 서비스 관리 체계를 확립한 영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기능을 수행하는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 후 기관별로 6페이지 정도로 작성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해놓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서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 및 웰빙을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긍정적인 면과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특히, 전년도에 부적합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분석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 OFSTED는 대학 내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사자로 활용한다. 방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며 OFSTED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만이 구매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질 관리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호주의 경우,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족지원실에 등록된 개인 탁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보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개인의 수요에 최대한 반응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던 호주의 센터링크 서비스도 참고할 만하다. 바우처 대상 아이들이 결석하거나 조퇴할 경우 이를 서비스 제공일자로 파악해야 하는지, 바우처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 개별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의 바우처 적용 등 서비스 공급자가 실제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호주의 액세스 카드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는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을 앞두고 보다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액세스 카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비판을 받았다. 이는 액세스 카드가 개인정보를 칩에 탑재한 스마트 카드의 형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호주 국민들의 상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정보 관리와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인하였고, 은행협회 등에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를 원칙으로 발급되며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개인인증 기능을 갖춘 IC 카드로 발급된다. 두 카드 모두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액세스 카드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i-사랑카드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존의 e-보육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며, 이는 타 부서의 정보시스템들과도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역시 e-유치원시스템의 일부로, 대상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은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칩이 내장된 IC 카드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며,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카드의 도난 및 분실 시의 대처방법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이용가능한 통합 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IV.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수요자 인식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요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육아지원 바우처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i-사랑카드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담고 있다.

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가. i-사랑카드 인식수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묵시적 형태의 보육 바우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¹³⁾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되어 왔던 묵시적 보육 바우처는 2009년 9월부터 'i-사랑카드'라는 이름의 보육서비스 전자이용권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즉, 기존의 묵시적 보육 바우처가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 왔다면, 보육서비스 전자이용권은 취학전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i-사랑카드'라는 명시적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i-사랑카드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응답 부모의 48.3%가 알고 있다고 하였고, 보육시설장들은 90.2%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1-1>참조). 조사 당시 i-사랑카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보육시설장들은 각종 토론회와 연합회 회의 등을 통해서 i-사랑카드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인지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13) 입소료는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을 포함하며, 보육료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체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를 포함한다.

<표 IV-1-1> i-사랑카드 인지 - 부모, 보육시설장

단위: %(명)

	알고 있다	모른다	계	$\chi^2(df)$
전체	71.1	28.9	100.0(940)	
부모	48.3	51.7	100.0(429)	199.712(1)***
보육시설장	90.2	9.8	100.0(511)	

* p<.05 ** p<.01 *** p<.001

보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사랑카드 도입에 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1.6%를 차지한 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9%이다. 그러나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응답은 2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2> i-사랑카드 인지 - 전문가

단위: 명, %

인지 정도	빈도	퍼센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	13	41.9
들은바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6	51.6
전혀 들은바 없다	2	6.5
합계	31	100.0

다음으로, i-사랑카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보육시설장들의 경우는 응답자의 40.8%가 매우 반대, 40.0%가 반대하는 편으로 80.8%가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육시설장의 의견은 시설유형과 시설운영 기간, 그리고 지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의 찬성 정도가 가장 높고(매우 찬성 11.5%, 찬성하는 편 28.5%) 민간 보육시설장들의 반대 정도가 가장 높다(매우 반대 59.1%, 반대하는 편 33.3%). 시설 운영 기간은 5-15년 운영을 한 보육시설장들이 반대 의견이 강한 반면, 4년 이하이거나 15년 이상 운영을 한 보육시설장들은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 규모 별로 찬성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표 IV-1-3>참조).

<표 IV-1-3>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 - 보육시설장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4.0	15.3	40.0	40.8	100.0(503)	
시설유형별						
국공립	11.5	28.5	40.8	19.2	100.0(130)	81.561(9)**
법인	3.4	16.2	45.3	35.0	100.0(117)	
민간	.0	7.6	33.3	59.1	100.0(132)	
가정	.8	8.9	41.1	49.2	100.0(124)	
지역규모별						
대도시	5.0	12.3	48.4	34.2	100.0(219)	14.855(6)*
중소도시	3.3	18.5	33.2	45.0	100.0(211)	
읍면지역	2.7	15.1	34.2	47.9	100.0(73)	
시설운영기간별						
15년 이상	10.6	15.4	37.4	36.6	100.0(123)	39.701(12)***
10-15년	.0	17.6	40.1	42.3	100.0(142)	
5-10년	3.8	8.5	50.0	37.7	100.0(130)	
4년 이하	1.9	19.0	31.4	47.6	100.0(105)	

* p<.05 ** p<.01 *** p<.001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i-사랑카드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현행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와 지원받은 경험을 먼저 조사하였다. 현재 보육료 지원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586,836명, 만5세아 지원 145,303명,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09,599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7,615명이다. 이상의 보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평균 보육시설 아동의 63.9%이다(2008. 12. 보육통계).

<표 IV-1-4> 보육료 지원내역(2008)

종류별	구 분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지원비율	5계층(1층, 2층 100, 3층 80, 4층60, 5층30%)
만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67천원 / 월
	지원비율	100%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186천원 / 월, 만1세 : 164천원 / 월, 만2세 : 135천원 / 월, 만3세 : 93천원 / 월, 만4세 : 84천원 / 월
	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장애정도 및 소득 무관)
	지원단가	372천원 / 월
	지원비율	100%

자료: 여성가족부, 2008 보육사업안내.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응답 부모의 97.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0.3%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 51.6%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1.0%는 대략의 지원액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7.4%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육료 지원액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 중, 안내문을 통해 지원액을 통보받는 경우는 56.8%였다(<표 IV-1-5>참조).

<표 IV-1-5> 보육료 지원 인지 - 부모

단위: %(명)

보육료 지원 제도 인지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원액인지		지원액안내문통보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알고있다	97.0(417)	지원	60.3(258)	정확인지	51.6(132)	통보받음	56.8(142)
모른다	3.0(13)	비지원	39.7(170)	대략인지	41.0(105)	통보없음	108(43.2)
				전혀모름	7.4(19)		
계	100.0(430)	계	100.0(428)	계	100.0(256)	계	100.0(250)

현재의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한다’가 11.5%(49명), ‘만족하는 편이다’가 44.7%(190명),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38.4%(159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6.4%(27명)이다. 만족도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일수록, 현행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들 중에서도 33.4%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여, 보육료 지원여부에 따라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만 지원여부와 만족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다.

<표 IV-1-6>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부모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	계	$\chi^2(df)$
전체	11.6	44.7	37.4	6.4	100.0(423)	
지원여부별						
지원	16.0	50.6	31.5	1.9	100.0(257)	42.072(3)***
미지원	4.8	35.5	46.4	13.3	100.0(166)	
시설유형별						
국공립	16.3	48.4	29.3	6.0	100.0(184)	18.840(9)*
법인	8.6	44.4	43.2	3.7	100.0(81)	
민간	3.7	38.3	48.1	9.9	100.0(81)	
가정	11.7	42.9	39.0	6.5	100.0(77)	

* p<.05 ** p<.01 *** p<.001

한편,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불만족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가 56.3%(104명)

로 가장 큰 이유였다. 다음으로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가 25.0%(46명),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가 15.3%(27명), ‘지원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 대상자 밝히는 것이 싫어서’가 3.4%(6명)였다(<표 IV-1-7> 참조).

<표 IV-1-7> 보육료 지원제도 불만족 이유 - 부모

단위: %(명)

구 분	지원금액이 적음	지원대상이 제한적	지원절차가 복잡	지원대상자임을 밝히기 어려움	계	$\chi^2(df)$
전체	25.0	56.3	15.3	3.4	100.0(182)	
연령별						
20 대	40.0	40.0	6.7	13.3	100.0(15)	13.475(6)*
30 대	21.5	60.4	16.1	2.0	100.0(149)	
40 대	44.4	38.9	11.1	5.6	100.0(18)	

* p<.05 ** p<.01 *** p<.001

보육료 지원제도의 오·남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거점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러한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냐는 질문을 하였다. ‘직접 도운 적이 있다’는 경우는 응답자의 0.4%(1명)였고,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17.8%(45명)였다. 직접 도운 경험이 있다는 부모의 부정 사례의 이유는 ‘다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절감혜택’ 때문이었다.

나. 예상되는 변화

아동연령, 소득수준 등 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사랑카드는 부모를 통해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는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i-사랑카드는 명시적 바우처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제공하는 선택권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의 서비스만을 구매할 수 있게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현금보조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응답자의 44.0%는 좋아지는 것으로, 29.3%는 별 차이 없을 것으로, 26.7%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의 평가는 교육수준과 시설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부모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차이가 없거나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표 IV-1-8>참조).

<표 IV-1-8>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 부모

단위: %(명)

구 분	더 좋다	더 불편하다	차이없다	계	$\chi^2(df)$
전체	44.0	26.7	29.3	100.0(423)	
교육수준별					
고졸이하	44.1	28.0	28.0	100.0(165)	16.675(8)*
전문대졸	51.6	30.5	17.9	100.0(95)	
대졸	38.7	21.8	39.4	100.0(142)	
대학원졸	38.1	38.1	23.8	100.0(21)	
시설이용기간별					
1년 미만	47.8	29.6	22.6	100.0(115)	16.679(6)**
1~2년 미만	51.4	15.0	33.6	100.0(107)	
2~3년 미만	41.9	29.9	28.2	100.0(117)	
3년 이상	31.4	36.0	32.6	100.0(86)	

* p<.05 ** p<.01 *** p<.001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이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진다’가 37.3%이고,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29.7%이다.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27.6%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낙인감이 사라진다’는 의견도 5.4%였다(<표 IV-1-9> 참조).

<표 IV-1-9> i-사랑카드 도입 선호 이유- 부모

단위: %(명)

구 분	선택확장	권리의식	재정운영 투명	낙인감소	계	$\chi^2(df)$
전체	27.1	29.8	37.6	5.5	100.0(181)	
가구소득별						
199만원 이하	23.1	33.3	41.0	2.6	100.0(3)	6,740(9)
200 ~ 299만원	33.3	33.3	25.0	8.3	100.0(48)	
300 ~ 399만원	25.0	25.0	42.9	7.1	100.0(56)	
400만원 이상	26.3	28.9	42.1	2.6	100.0(38)	
어머니직업별						
전 일 제	28.1	32.8	32.8	6.3	100.0(64)	4,782(6)
시 간 제	15.2	30.3	45.5	9.1	100.0(33)	
전업주부	31.0	28.6	36.9	3.6	100.0(84)	

* p<.05 ** p<.01 *** p<.00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해서 부모들은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더 좋아지거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더 많이 지지하였지만, 더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은 i-사랑카드 도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매달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데에 응답자의 68.1%가 동의하였다. 이 밖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16.4%이고 ‘자산정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노출’에 대한 부담이 10.3%였다. i-사랑카드 도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가구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이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i-사랑카드 도입 비선호 이유- 부모

단위: %(명)

구 분	번거로움 (직접결제)	카드관리 불편	개인정보 노출	기타	계	$\chi^2(df)$
전체	68.5	15.3	10.8	5.4	100.0(111)	
가구소득별						
199만원 이하	70.4	11.1	18.5	0	100.0(27)	19,380(9)*
200 ~ 299만원	77.8	13.3	6.7	2.2	100.0(45)	
300 ~ 399만원	76.2	9.5	4.8	9.5	100.0(21)	
400만원 이상	33.3	33.3	16.7	16.7	100.0(18)	

* p<.05 ** p<.01 *** p<.001

i-사랑카드가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보육시설장들에게 질문하였다. 먼저, 보육시설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영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4점 만점에 2.97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은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를 표시했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로 예상되는 ‘보육료 신청·승인 등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될 것(4점 만점에 2.22점)’이라거나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4점 만점에 1.78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동의 정도를 표시했다. 한편 부모의 선택권 증대로 보육시설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어린이집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4점 만점에 2.10점)’ 또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4점 만점에 1.99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전자바우처 제도가 현재보다 빠르게 보육료 정산 및 지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육료 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효과와 관련하여 ‘보육료 수납이 빨라져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4점 만점에 1.87점)’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i-사랑카드 홍보에 따라 신규 영유아가 늘어날 것(4점 만점에 1.67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표 IV-1-11>참조).

<표 IV-1-11>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1 - 보육시설장

단위:점,명

		행정업무 경감	신규영유 아증대	경쟁증대	서비스 수준향상	아동관리 어려움	경영도움	행정부와 수평관계
국공립	평균	1.97	1.80	2.17	2.16	2.79	1.93	2.28
	사례수	131	130	130	129	131	131	129
법인	평균	1.81	1.77	2.11	1.98	2.85	1.94	2.30
	사례수	118	117	118	118	116	117	114
민간	평균	1.69	1.52	1.97	1.85	3.15	1.77	2.16
	사례수	135	131	133	135	133	135	130
가정	평균	1.66	1.58	2.16	1.98	3.07	1.85	2.13
	사례수	127	124	126	126	127	126	123
합계	평균	1.78	1.67	2.10	1.99	2.97	1.87	2.22
	사례수	511	502	507	508	507	509	496
F값		4.150**	5.133**	1.168	2.838*	3.504*	.880	.945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

*P< 0.5, **P< 0.01, ***P< 0.001

이와 같은 태도는 시설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과 ‘i-사랑카드 홍보에 따라 신규 영유아가 늘어날 것’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보다 민간 보육시설장과 가정보육시설장이 더 부정적이었다. ‘영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장들이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은 i-사랑카드의 도입으로 부모에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에게 질문하였다. 현행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차등보육료라고 할지라도 소득수준별로 지원되는 차등보육료와 영아(0-2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2종의 보육료가 합산되어 지원된다. 전자의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별로 지원되지만, 후자의 차등보육료는 연령별 지원으로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0세 영아의 경우 2008년 보육료 372,000원과 연령별 기본 보조금 340,000원이 지원된다. 그런 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인 0세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712,000원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0세아의 부모는 340,000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아의 부모는 i-사랑카드에 연령별 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4점 만점에 2.80점)’과 ‘부모가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4점 만점에 2.62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4점 만점에 3.44점)’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동의를 하였다. ‘원비 수납일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4점 만점에 2.57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동의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집안 환경(저소득층 아동)노출이 감소될 것(4점 만점에 1.92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V-1-12>참조).

특히,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를 달리했다.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들보다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장들이 부모 부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평가하고 있다.

<표 IV-1-12>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2 - 보육시설장

단위:점,명

		체감도증대	권리의식증대	부모방문불 편증대	카드관리 부담	낙인효과
국공립	평균	2.75	2.89	3.61	3.29	1.98
	사례수	131	131	130	127	130
법인	평균	2.59	2.74	3.56	3.44	2.02
	사례수	116	116	116	113	115
민간	평균	2.61	2.83	3.64	3.51	1.76
	사례수	134	132	133	133	131
가정	평균	2.53	2.71	3.46	3.51	1.92
	사례수	126	126	127	127	125
합계	평균	2.62	2.80	3.57	3.44	1.92
	사례수	507	505	506	500	501
F값		1.119	.736	1.225	3.504*	1.955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P< 0.5, **P< 0.01, ***P< 0.001

i-사랑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정원 관리/부정 수급 관리 용이)(5점 만점에 4.06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부모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체감도 증가(5점 만점에 4.06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 ‘정부의 행정 부담 경감(5점 만점에 3.81점)’에 대해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전문가 집단은 ‘보육시설 간 서비스 경쟁 강화(5점 만점에 3.83점)’,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5점 만점에 3.48점)’와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5점 만점에 3.48점)’, ‘미취업모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5점 만점에 3.39점)’,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5점 만점에 3.35점)’에 대해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5점 만점에 3.19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승(5점 만점에 3.16점)’과 ‘민간보육시설 공급 확대(5점 만점에 3.00점)’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권리의식 제고(5점 만점에 3.84점)’, ‘전자카드의 오·남용(매매·대여 등)(5점 만점에 3.61점)’,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낙인효과 감소(5점 만점에 3.52점)’ 및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5점 만점에 3.48점)’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기대를 표시했다. 반

면, '카드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분실, 활용미숙, 시골의 경우 왕래가 불편함으로 인한 이용 포기 등)(5점 만점에 2.94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표 IV-1-13>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 전문가

단위: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육 전문가 평균(N=31)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6.5	6.5	41.9	35.5	9.7	3.35
민간보육시설 공급 확대	6.5	16.1	51.6	22.6	3.2	3.00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정원 관리/부정 수급 관리 용이)	5.3	1.2	16.1	35.5	41.9	4.06
정부의 행정 부담 경감	6.5	3.2	19.4	45.2	25.8	3.81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	6.5	16.1	22.6	32.3	22.6	3.46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	6.5	6.5	29.0	48.4	9.7	3.48
부모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체감도 증가	3.2	6.5	9.7	41.9	38.7	4.06
부모의 권리의식 제고	3.2	6.5	16.1	51.6	22.6	3.84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낙인효과 감소	12.9	6.5	19.4	38.7	22.6	3.52
보육시설 간 서비스 경쟁 강화	3.3	6.7	20.0	43.3	26.7	3.83
미취업모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	9.7	6.5	32.3	38.7	12.9	3.39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6.5	16.1	35.5	35.5	6.5	3.19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승	3.2	19.4	38.7	35.5	3.2	3.16
전자카드의 오·남용(매매·대여 등)	3.2	12.9	22.6	41.9	19.4	3.61
카드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	6.5	32.3	29.0	25.8	6.5	2.94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한편,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의 도입이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5점 만점에 4.27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반면, 보육시설장의 만족도(5점

만점에 2.45점)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자체 공무원(5점 만점에 3.74점)과 교사(5점 만점에 3.26점)의 만족도도 다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정부정책의 효율성(5점 만점에 3.90점)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IV-1-14>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단위: %, 점

구 분	매우 저하될 것임	약간 저하될 것임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임	조금 향상될 것임	매우 향상될 것임	보육 전문가 평균(N=31)
부모의 만족도			13.3	46.7	40.0	4.27
기관장의 만족도	19.4	41.9	19.4	12.9	6.5	2.45
교사의 만족도		9.7	64.5	16.1	9.7	3.26
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	3.2	3.2	32.3	28.7	22.6	3.74
정부정책의 효율성	6.5		16.1	51.6	25.8	3.90

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1) 제도설계 및 운영

전문가들에게 향후 i-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기준으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재 i-사랑카드 보조금의 기준은 소득계층과 연령이다. 또한 i-사랑카드 도입 시기에 맞추어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소득계층에 따른 보조금 수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시간(반일, 전일) 및 자녀수, 해당아동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라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표 IV-1-15> i-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전문가
단위: %

구 분	소득계층 보조금 수준	해당아동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이용시간	자녀수	출생순위
동일	6.5	29.0	38.7	12.9	25.8	71.0
차등	93.5	71.0	61.3	87.1	74.2	29.0

i-사랑카드는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영아)을 통합하여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차등보육료뿐 아니라 기본보조금도 전자카드를 통해 통합하여 지원할 때,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기본보조금 수령 요건 준수여부를 점수화하여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형태로 관리(41.9%)’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보육시설 간에 계약을 통한 질 관리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35.5%였다. 반면, ‘수요자(부모)에 의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지지한 전문가는 응답자의 19.4%였다.

<표 IV-1-16>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방안- 전문가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방안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지자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보육시설 간에 계약을 통한 질 관리 실시	11	35.5
기존의 기본보조금 수령 요건 준수여부를 점수화하여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형태로 관리	13	41.9
수요자(부모)에 의한 자율적인 질 관리	6	19.4
기타	1	3.2
합계	31	100.0

i-사랑카드 제도의 시행시 전자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항목에 보육료 외에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응답한 전문가의 70.0%가 ‘지자체 특수시책 중 보육료(아동)지원 성격의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0%는 ‘지자체 특수시책 중 시설지원 성격의 사업’, 10%는 ‘특기, 적성비를 응답하였다.

<표 IV-1-17> i-사랑카드 추가 지원 항목- 전문가

단위: 명, %

추가지원 항목	빈도	퍼센트
지자체 특수시책 중 보육료(아동)지원 성격의 사업	21	70.0
지자체 특수시책 중 시설지원 성격의 사업	6	20.0
특기, 적성비	3	10.0
합계	30	100.0

i-사랑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할 경우에 부모들이 연회비를 부담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부모들은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발급(41.5%)’을 가장 선호하였고, ‘금액에 상관없이 부담’하겠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38.3%이며 ‘3,000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부담’하겠다는 부모가 15.0%, 그리고 ‘소액의 연회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면 부담(5.2%)하겠다는 부모도 소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회비 부담의사는 시설을 이용한 기간에 따라서 상이했는데, 3년 이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의 65.9%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담(55.3%)’ 하거나 ‘3,000원 이하의 소액 부담(10.6%)’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어떤 형태로든 연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어린이집 이용이 3년 미만인 부모들의 경우는 소액 또는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이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1년 미만 부모 51.5%, 1-2년 미만 54.3%, 2-3년 미만 47.4%).

<표 IV-1-18>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부담의사 - 부모

단위: %(명)

구 분	소액(3,000 원이하)	부담가능	포인트 대체	체크카드	계	$\chi^2(df)$
전체	15.1	38.5	5.2	41.1	100.0(423)	
시설이용기간별						18.949(9)*
1년 미만	18.3	32.2	7.0	42.6	100.0(115)	
1~2년 미만	15.0	39.3	2.8	43.0	100.0(107)	
2~3년 미만	15.5	31.9	4.3	48.3	100.0(116)	
3년 이상	10.6	55.3	7.1	27.1	100.0(85)	

* p<.05 ** p<.01 *** p<.001

i-사랑카드 사용자를 위한 혜택 중 선호하는 것 2가지를 선택하라는 응답에 대해

서 조사에 응한 부모의 51.0%는 ‘영유아용품 할인’ 혜택을 선호하였고, 46.6%의 부모들은 ‘주유할인’ 혜택을 선호하였다. ‘놀이공원 할인’이 36.2%, ‘물품구입 무이자할부’ 혜택이 29.6%이다. ‘외식 쿠폰(17.2%)’과 ‘영화 할인(15.3%)’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1.2%)’도 소수 있었다.

<표 IV-1-19> i-사랑카드 선호 혜택- 부모(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주유할인	항공 마일리지	영화할인	물품구입 무이자할부	놀이공원 할인	영유아용 품 할인	외식쿠폰
전체	46.6	1.2	15.3	29.6	36.2	51.0	17.2
연령별							
20 대	39.0		9.8	29.3	43.9	65.9	12.2
30 대	46.1	.6	15.1	29.8	34.6	51.5	19.3
40 대	57.4	6.4	21.3	29.8	36.2	36.2	6.4
가구소득별							
199만원 이하	33.0	1.1	19.3	42.0	33.0	51.1	18.2
200~ 299만원	46.9	.8	14.8	30.5	39.8	50.8	14.8
300~ 399만원	43.5	.9	11.1	29.6	39.8	51.9	18.5
400만원 이상	64.6	2.4	18.3	15.9	24.4	53.7	17.1
어머니직업별							
전 일 제	47.4	2.6	17.3	26.9	31.4	53.2	19.2
시 간 제	55.0	1.7	16.7	35.0	31.7	41.7	11.7
전업 주부	43.2		13.2	30.0	41.6	52.1	17.4

20대와 30대 부모는 ‘영유아용품 할인(20대 65.9%, 30대 51.5%)’을 가장 선호하였고, 40대 부모는 ‘주유할인(57.4%)’을 가장 선호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199만원 이하 소득의 부모는 ‘물품구입 무이자할부(42.0%)’을 가장 선호하였고, 200만원~399만원까지의 소득을 가진 부모는 ‘영유아용품 할인(200~ 299만원 50.8%, 300~ 399만원 51.9%)’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모는 ‘주유할인(64.6%)’을 가장 선호하였다.

보육시설장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적정한 카드결제 주기는 1개월이 42.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33.5%, 6개월 18.2%, 부모가 원하는 기간만큼이 3.4%, 12개월이라는 응답이 2.8%였다. 한편, 부모의 적정 카드결제 주기는 시설 유형,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 크기, 시설의 아동 규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응답자의 52.4%가 1개월, 24.6%가 3개월이 적정한 결제 주기라고 응답한 반면, 국공립 시설의 경우 43.8%가 3개월 40.8%가 1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규모별로는 소규모인 아동 20명 이하 보육시설장은 응답자의 52.6%가 1개월이라고 응

답한 반면, 50명 이상인 경우는 약 39%가 3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20> i-사랑카드 적정 결제 주기 - 보육시설장

단위: %(명)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부모가 원하는 만큼	계	$\chi^2(df)$
전체	42.2	33.5	18.2	2.8	3.4	100.0(505)	
시설유형별							
국공립	40.8	43.8	13.8	0.8	0.7	100.0(130)	28.834(12)**
법인	37.6	37.6	17.1	4.3	3.4	100.0(117)	
민간	37.9	28.0	26.5	3.0	4.5	100.0(132)	
가정	52.4	24.6	15.1	2.4	5.6	100.0(126)	
지역크기별							
대도시	35.5	35.9	21.2	3.2	4.1	100.0(217)	15.653(8)*
중소도시	47.2	31.1	17.5	.9	3.3	100.0(212)	
읍/면	47.4	32.9	11.8	6.6	1.3	100.0(76)	
시설규모별							
20명이하	52.6	25.2	17.0	1.5	3.7	100.0(135)	24.789(12)*
21-50명	43.6	31.6	17.3	2.3	5.3	100.0(133)	
51-80명	38.3	39.1	17.2	1.6	3.9	100.0(128)	
81명 이상	32.4	39.8	21.3	5.2	1.3	100.0(108)	

* p<.05 ** p<.01 *** p<.001

보육시설장들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적절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응답자의 91.2%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다. 응답자의 4.3%가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고, 3.9%의 응답자가 '0.5% 이하'라면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크기와 보육시설장들의 연령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읍/면에 소재한 보육시설장들이 일정부분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대도시 소재 보육시설장들이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대도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장들은 94.1%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반면, 중소도시는 89.3%가 읍/면 소재 보육시설장들은 88.2%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연령별로 40대는 5.5%의 응답자가 '0.5%이하', 4.7%가 '정부 협약에 따라서' 수수료 부담 의사를, 50대 이상자들은 5.7%가 '정부 협약에 따라서', 2.3%가 '0.5%이하'의 수수료 부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표 IV-1-21>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걱정 부담 - 보육시설장

단위: %(명)

구 분	부담의사 없음	0.5%이하	0.5-1.0%	1.0%이상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	계
전체	91.2	3.9	.4	.2	4.3	100.0(511)
지역크기별						
대도시	94.1	3.6			2.3	100.0(220)
중소도시	89.3	2.8	.9		7.0	100.0(215)
읍/면	88.2	7.9		1.3	2.6	100.0(76)
연령별						
20 대	93.3		6.7			100.0(20)
30 대	93.5	2.6		.6	3.2	100.0(77)
40 대	89.3	5.5	.4		4.7	100.0(201)
50대 이상	92.0	2.3			5.7	100.0(205)

카드결제 수수료가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은 부담된다는 의견(5점 만점에 3.63점)이었다. 부담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법인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높은 부담 정도(3.74점)를 이야기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부담(3.41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의 부담정도 - 보육시설장

단위: 점, 명

	평균	사례수	F값		평균	사례수	F값
시설유형별				도입찬성정도별			
국공립	3.41	131	10.414 ***	매우찬성	3.60	20	6.123***
법인	3.74	117		찬성	3.47	77	
민간	3.71	133		반대	3.58	200	
가정	3.69	127		매우반대	3.75	203	
계	3.63	508		계	3.63	500	

1점: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4점: 매우 부담된다

*P< 0.5, **P< 0.01, ***P< 0.001

이와 같은 부담 정도는 i-사랑카드 도입을 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입장

이다. i-사랑카드 도입을 ‘매우 반대’하는 보육시설장 집단이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 정도를 가장 크게(3.75점) 느끼고 있다.

카드결제 시행에 따라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보육시설장 응답자의 84.3%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가정 보육시설장(89.8%)이 가장 많은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장(74.0%)이 가장 적다. 월 10,000-15,000원 사이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보육시설장은 응답자의 8.4%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장의 15.3%와 가정 보육시설장의 4.7%가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혔다.

<표 IV-1-23> i-사랑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적정 부담 - 보육시설장

단위: %(명)

구 분	부담의사 없음	월 10,000 -15,000	월 15,000 -30,000	월 30,000 이상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	계
전체	84.3	8.4	.2	.2	6.8	100.0(511)
시설유형별						
국공립	74.0	15.3	.8		9.9	100.0(131)
법인	84.7	6.8			8.5	100.0(118)
민간	88.9	6.7			4.4	100.0(135)
가정	89.8	4.7		.8	4.7	100.0(127)
도입찬성정도별						
매우찬성	75.0	15.0			10.0	100.0(20)
찬성	71.4	13.0	1.3		14.3	100.0(77)
반대	85.1	8.0		.5	6.5	100.0(201)
매우반대	89.3	6.8			3.9	100.0(205)

영유아 관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해서, 전자출석부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5점 만점에 2.54점)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시설유형 및 규모별, 시설장의 교육정도별,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찬성정도별로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났다. 먼저,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은 그저 그렇다(5점 만점에 3.02점)라는 입장인 반면, 민간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부정적(5점 만점에 2.22점)이었다. i-사랑카드 도입에 찬성하는 보육시설장들은 그저 그런 정도로 전자출석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매우 찬성하는 집단 3.45점, 찬성하는 집단 3.25점)했고 i-사랑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평균보다 낮은

정도의 필요성(반대하는 집단 2.26점, 매우 반대하는 집단 2.54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시설 규모별로도 입장 차이가 있다. 시설 유형이나 i-사랑카드 찬성 정도만큼 큰 폭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아동 수가 21~50명(5점 만점에 2.69점)이거나 81명 이상(5점 만점에 2.67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전자출석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대체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원 졸업자(5점 만점에 2.86점)가 전자출석부 도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5점 만점에 2.13점)를 보였다.

<표 IV-1-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 - 보육시설장

단위: 점, 명

	평균	사례수	F값		평균	사례수	F값
시설유형별				도입찬성정도별			
국공립	3.02	131	12.947 ***	매우찬성	3.45	20	18.093***
법인	2.61	116		찬성	3.25	77	
민간	2.22	133		반대	2.45	198	
가정	2.28	124		매우반대	2.26	202	
계	2.54	504		계	2.54	497	
시설규모별				교육정도별			
20명 이하	2.29	133	29947*	고졸이하	2.13	23	5.106**
21 ~50명	2.69	133		전문대졸업	2.69	103	
51 ~80명	2.52	131		대졸	2.40	269	
81명 이상	2.67	106		대학원졸업	2.86	105	
계	2.54	503		계	2.54	500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

*P< 0.5, **P< 0.01, ***P< 0.001

2) 발급절차

i-사랑카드의 신청 장소로 가장 편리한 곳으로 부모들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44.1%)’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30.8%)’과 ‘금융기관(25.1%)’의 순이었다.

대도시 거주 부모들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38.3%)’와 ‘어린이집(34.3%)’

그리고 ‘금융기관(27.4%)’에 대해 대체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중소도시 거주 부모들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52.4%)’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시설 유형별로 민간과 가정 시설 부모들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민간 50.6%, 가정 58.1%)’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국공립 시설과 법인 시설의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국공립 37.9%, 법인 38.8%)’와 ‘어린이집(국공립 36.2%, 법인 35.0%)’에 대한 선호 비중이 유사하였다.

<표 IV-1-25> 적절한 i-사랑카드 신청 장소 - 부모

단위: %(명)

구 분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금융기관	어린이집	계	$\chi^2(df)$
전체	44.1	25.1	30.8	100.0(427)	
지역크기별					8.141(2)*
대도시	38.3	27.4	34.3	100.0(247)	
중소도시	52.4	22.3	25.3	100.0(168)	
시설유형별					16.167(6)*
국공립	37.9	26.0	36.2	100.0()	
법인	38.8	26.3	35.0	100.0()	
민간	50.6	30.9	18.5	100.0()	
가정	57.1	15.6	27.3	100.0()	

* p<.05 ** p<.01 *** p<.001

3) 효과적인 홍보수단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53.8%)’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보육정보센터(15.4%)나 반상회(11.5%) 같이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또는 개별 시설(11.5%)에 공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표 IV-1-26> i-사랑카드 홍보수단- 전문가

단위: 명, %

효과적인 홍보수단	빈도	퍼센트
개별시설에서 공지	3	11.5
보육정보센터에서 공지	4	15.4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	14	53.8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	3.8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지	3	11.5
별도로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	1	3.8
합계	26	100.0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i-사랑카드의 원래 도입 예정 시기는 2009년 7월이었다. 예정된 시기에 I-사랑카드 카드가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한 전문가들의 83.4%가 ‘시행 시기는 늦춰지겠으나 시행(66.7%)’되거나 ‘반드시 시행될 것(16.7%)’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반면, ‘보육시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응답자의 16.7%였다.

<표 IV-1-27> i-사랑카드 시행 예상- 전문가

단위: 명, %

i-사랑카드 시행에 대한 예상	빈도	퍼센트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5	16.7
시행되지만 시행시기는 늦어질 것이다	20	66.7
보육시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5	16.7
합계	30	100.0

i-사랑카드의 시행여부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부모와 보육시설장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부모 응답자의 89.1%가 시행될 것(‘시행시기는 늦춰지겠으나 시행(69.8%)’ 과 ‘반드시 시행될 것(18.3%)’)이라는 의견이고, 보육시설장은 그 비율이 다소 낮으나 74.3%가 시행될 것(‘시행시기는 늦춰지겠으나 시행(57.3%)’)과 ‘반드시

시행될 것(17.0%)'이라는 점에서 시행을 예견하는 태도가 주류이다. 하지만,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모 응답자의 11.9%와 보육시설장의 25.7%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표 IV-1-28> i-사랑카드 시행 예상 - 부모, 보육시설장

단위: %(명)

	반드시 시행될 것	늦게 시행될 것	시행되지 못할 것	계	$\chi^2(df)$
전체	17.6	63.0	19.4	100.0(928)	
부모	18.3	69.8	11.9	100.0(427)	28.588(2)***
보육시설장	17.0	57.3	25.7	100.0(501)	

* p<.05 ** p<.01 *** p<.001

부모들은 응답자의 50%가 '시설의 반대'로 i-사랑카드의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보육시설장들은 응답자의 82.2%가 '시설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 부모는 응답자의 26.9%가 '부모의 반대'를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보육시설장은 11.0%가 '부모의 반대'를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그 밖에 부모들은 '카드사 문제', '홍보 부족', '기존 방식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i-사랑카드의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보육시설장들은 '부모가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제대로 내지 않아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과 '부모나 보육시설장 모두 원하지 않는 제도' 또는 '제도 자체가 문제 있는 제도'라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표 IV-1-29> i-사랑카드 시행 어려운 이유 - 부모, 보육시설장

단위: 명, %

	부모반대	시설반대	기타	계	$\chi^2(df)$
전체	11.0	72.9	16.0	100.0(181)	
부모	26.9	50.0	23.1	100.0(52)	24.163(2)***
보육시설장	4.7	82.2	13.2	100.0(129)	

* p<.05 ** p<.01 *** p<.001

보육시설장들은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간섭 심화(27.4%)'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불편함(23.3%)', 그

리고 ‘제도의 복잡성(22.3%)’을 들었다. 이 밖에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12.7%)’과 ‘보육료 연체율(6.8%)’ 등의 재정적 문제와 ‘보육료 수입의 노출 가능성(4.1%)’도 지적하였다.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은 소속된 시설유형별로 다른 태도를 보여줬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장의 경우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불편함(32.1%)’을 가장 크게 지적한 반면, 법인 보육시설장의 경우 ‘제도의 복잡성(26.3%)’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장들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간섭 심화(민간 38.5%, 가정 37.0%)’를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30> i-사랑카드 도입의 장애물-보육시설장

단위: %(명)

구 분	결제 수수료	부모 간섭	신제도 불편	제도 복잡성	수입 노출	보육료 연체	기타	계	$\chi^2(df)$
전체	12.7	27.4	23.3	22.3	4.1	6.8	3.3	100.0(511)	
시설유형별									
국공립	17.6	15.3	32.1	22.1	.8	9.2	3.0	100.0(131)	66.796(21)**
법인	18.6	17.8	20.3	26.3	3.4	9.3	4.2	100.0(118)	
민간	10.4	38.5	20.0	22.2	3.0	3.0	3.0	100.0(135)	
가정	4.7	37.0	20.5	18.9	9.4	6.3	3.1	100.0(127)	
지역규모별									
대도시	12.7	24.5	24.1	23.2	5.0	6.8	3.6	100.0(220)	14.855(6)*
중소도시	13.5	31.2	22.3	21.9	3.3	4.7	3.2	100.0(215)	
읍면지역	10.5	25.0	23.7	21.1	3.9	13.2	2.6	100.0(76)	

* p<.05 ** p<.01 *** p<.001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사랑카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망하도록 하고, 성공적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하였다. 보육 현장에서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기대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의 48.4%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2.3%,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응답자의 19.4%였다.

<표 IV-1-31>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전문가

단위: 명, %

성공적인 정착 전망	빈도	퍼센트
그렇다	10	32.3
아니다	6	19.4
잘 모르겠다	15	48.4
합계	31	100.0

먼저, i-사랑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전문가들은 '카드 사용의 일반화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개개인이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i-사랑카드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정책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i-사랑카드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장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이 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방면의 질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식과 더불어 '저소득 아동의 개별적 보육료 지원액을 알려줌으로서 심리적 부담감 없이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였다.

반면,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는 현재 시설의 환경적 조건과 카드사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들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평가인증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과 '보육시설은 집 가까운 곳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이 부모의 선택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육서비스 질과 무관한 경쟁으로 인하여 비교육적 경쟁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시설에서 수수료 및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지적하였는데, 기기 고장 등의 문제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초기 설비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비용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보육재정을 카드 관리 업무에 투입하는 것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인식수준

유치원장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유치원장과 부모들은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당시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기 이전이어서인지 전자카드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들은 79.5%가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부모들이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자카드제에 대한 부모의 인지는 사립유치원 이용 여부와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일수록 전자카드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았다.

<표 IV-2-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부모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chi^2(df)$
전체	20.5	79.5	100.0(420)	
시설유형별				
국공립	11.0	89.0	100.0(154)	14.736(4)**
사립	26.1	73.9	100.0(264)	
지역규모별				
대도시	25.4	74.6	100.0(248)	10.182(4)*
중소도시	14.0	86.0	100.0(157)	*
읍면지역	6.7	93.3	100.0(15)	

p<.05 ** p<.01 *** p<.001

유치원장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59.6%가 전자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50세 이상)에서 인지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이 가장 인지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했다. 조사당시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원감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원칙적으로는 원장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IV-2-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계	$\chi^2(df)$
전체	59.6	40.4	100.0(505)	
연령별				
30대 이하	68.2	31.8	100.0(88)	44.112(2)***
40 대	73.9	26.1	100.0(199)	
50세 이상	43.1	56.9	100.0(218)	
시설유형별				
국공립단설	88.0	12.0	100.0(25)	129.264(3)***
국공립병설	31.6	68.4	100.0(212)	
사립법인	76.5	23.5	100.0(51)	
사립개인	82.8	17.2	100.0(203)	

* p<.05 ** p<.01 *** p<.001

조사대상 원장들에게 전자카드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표 IV-2-2> 참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원장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다 사립, 특히 사립 개인 유치원장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전자카드제 인지여부에 따른 찬반의견을 보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유치원장들일 수록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 듣고 찬반의견을 표한 유치원장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2-3>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찬반의견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13.3	34.1	30.5	22.0	100.0(495)	
연령별						
30대 이하	7.0	33.7	33.7	25.6	100.0(86)	17.697(6)**
40대	9.3	31.4	34.5	24.7	100.0(194)	
50대 이상	19.5	36.7	25.6	18.1	100.0(215)	
시설유형별						
국공립단설	25.0	41.7	8.3	25.0	100.0(24)	92.306(9)***
국공립병설	23.7	42.5	24.2	9.7	100.0(207)	
사립법인	4.1	28.6	42.9	24.5	100.0(49)	
사립개인	2.5	24.9	38.3	34.3	100.0(201)	
인지여부별						
들어본 적 있다	5.8	31.1	34.8	28.3	100.0(293)	49.882(3)***
들어본 적 없다	24.3	38.6	24.3	12.9	100.0(202)	

* p<.05 ** p<.01 *** p<.001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7%를 차지한 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4%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자카드제의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집단 가운데 전문가들의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전문가

인지 정도	빈도	퍼센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	16	44.4
들은바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9	52.8
전혀 들은바 없다	1	2.8
합계	36	100.0

한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전자카드제에 대한 인지와 더

불어, 정부의 현행 유아학비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와 지원받은 경험을 먼저 조사하였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원기준 및 시설유형에 따른 지원액은 다음 <표 IV-2-5>와 같다.

<표 IV-2-5> 현행 유아학비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국·공립	사립	비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55,000	167,000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 100% 이하 균등지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6,500~55,000	만3세: 55,500~185,000 만4세: 50,100~167,000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55,000	만3세: 93,000 이내 만4세: 84,000 이내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이용기관의 유형,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6> 현행 유아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 부모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전체	95.5	4.5	100.0(421)

조사대상자 가운데, 44% 가량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원액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지원액을 통보받는다는 응답도 86%를 차지해, 보육시설에 비해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액에 대한 통보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현행 유아학비 지원 수혜경험

단위: %(명)

유치원비 지원여부		지원액인지		지원액안내문통보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지원	43.9(185)	정확 인지	76.6(141)	통보받음	85.9(159)
비지원	56.1(236)	대략 인지	20.7(38)	통보없음	14.1(26)
		전혀 모름	2.7(5)		
전체	100.0(421)	전체	100.0(184)	전체	100.0(185)

현재의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56.1%)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상대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일수록,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들 중에서도 30%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지원여부와 만족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모의 취업형태별로는 전일제 취업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부모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	계	$\chi^2(df)$
전체	11.0	36.8	40.9	11.2	100.0(418)	
지원여부별						
지원	20.8	48.6	27.3	3.3	100.0(183)	75.518(3)***
미지원	3.4	27.7	51.5	17.4	100.0(235)	
지역규모별						
대도시	12.3	42.8	37.4	7.4	100.0(243)	29.865(6)***
중소도시	6.5	29.4	46.4	17.6	100.0(153)	
읍면지역	33.3	6.7	53.3	6.7	100.0(15)	
어머니직업별						
전일제	16.3	43.3	32.6	7.8	100.0(141)	15.388(6)*
시간제	6.8	38.6	40.9	13.6	100.0(44)	
전업주부	8.4	31.9	46.9	12.8	100.0(226)	

* p<.05 ** p<.01 *** p<.001

한편,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불만족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라는 응답이 67.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원금액이 적어서(17.5%)’, ‘지원절차가 복잡해서(9.9%)’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지원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부모의 불만족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답자가 소수이긴 하나, 유치원 방문에 따른 낙인효과도 전자카드제에 재택인증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9>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사유 - 부모

단위: %(명)

구 분	지원금액이 적음	지원대상이 제한적	지원절차가 복잡	지원대상자임을 밝히기 어려움	지원기준이 부적절함	기타	계
전체	17.5	67.9	9.9	1.9	1.9	0.9	100.0(212)

한편 유아학비 지원제도의 오·남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아동의 허위등록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접 도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으나,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9.3%(39명)를 차지했다. 이는 보육비 지원제도의 오·남용 사례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면, 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웹 기반 재택인증서비스를 통해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보육료 지원금의 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카드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현재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예상되는 변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종이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 이용 권한이 설정된 전자카드를 유아학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모는 선택한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지원된 유아학비를 현금 대신 직접 사용하게 된다. 즉, 현재 유치원이 지원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교육청에 신청·수령하던 것을 부모의 IC카드 인증을 통해 아동의 기관 이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이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전문가, 부모, 유치원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유치원 부모의 44%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25%는 더 불편할 것 같다, 31%는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나, 연령, 가구소득,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10>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의견 - 부모

단위: %(명)

구 분	더 좋을 것 같다	더 불편할 것 같다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계
전체	44.0	25.1	30.9	100.0(418)

전자카드제 도입 이후 더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한 부모들과 더 불편할 것 같다고 응답한 부모들에게 각각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결과, 더 좋을 것 같은 이유로는 ‘유치원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아서(40.7%)’,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서(30.2%)’,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반면, 더 불편할 것 같은 이유로는 ‘분기마다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67.6%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이러한 불편함은 현재 계획 중인 전자카드제의 재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발급절차가 불편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19.6%, 11.8%로 뒤를 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행정적인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다.

<표 IV-2-11> 전자카드제 도입이 좋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단위: %(명)

구 분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	부모의 권리의식 증대	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효과	보조금 지원대상 이라는 낙인감 감소	계
전체	24.7	30.2	40.7	4.4	100.0(182)

<표 IV-2-12> 전자카드제 도입이 불편할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단위: %(명)

구 분	직접 방문 결제의 번거로움	카드의 보관 및 관리 불편	개인정보 노출/ 발급절차의 불편	기타(행정적인 불편 및 혼란)	계
전체	67.6	19.6	11.8	1.0	100.0(102)

다음으로는 유치원장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질문하였다.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유치원 운영상의 변화와 부모 입장에서 변화에 대해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점)~매우 그럴 것이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IV-2-1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 운영상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유치원장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홍보에 따른 신규유아 증가, 유치원 간 경쟁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표 IV-2-13>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약간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계
유치원 운영상 예상되는 변화	유치원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19.0	35.4	26.3	19.2	100.0(294)
	전자카드 홍보에 따른 신규유아 증가	26.8	50.1	19.4	3.7	100.0(489)
	유치원 간 경쟁 활성화	20.1	48.4	19.5	12.0	100.0(492)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18.8	42.0	30.3	8.9	100.0(495)
	유아들의 이동증가로 관리의 어려움	14.7	38.6	27.1	19.6	100.0(490)
	학비수납이 빨라져 경영에 도움	21.1	38.1	23.1	17.8	100.0(494)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 증가	10.6	22.0	33.7	33.7	100.0(490)
부모 입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부모의 권리의식 증가	8.4	25.7	35.2	30.8	100.0(491)
	원비수납일에 유치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7.9	17.2	21.4	53.5	100.0(495)
	카드발급, 재발급 및 관리 부담	2.7	14.7	46.9	35.7	100.0(484)
	낙인효과 감소	19.6	42.8	23.6	14.1	100.0(491)

부모 입장에서 예상되는 변화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 증가와 권리의식 증

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였으나,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편함(원비수납일에 유치원 방문, 카드발급 및 관리의 부담 등)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유치원에서 아동의 집안 환경(저소득층 아동)을 밝힐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한편, 이러한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유치원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유치원의 유형은 국공립병설, 국공립단설, 사립법인, 사립개인 네 가지로 유형화되나, 여기에서는 비교상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항목별로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들(행정업무 부담 감소, 신규유아 증가, 유치원 경쟁 활성화,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빠른 원비 수납으로 인한 경영상의 도움, 정부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 증가, 부모의 권리의식 향상,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높이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변화(유아 이동 증가로 인한 관리 어려움, 부모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카드발급 및 관리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비해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들 중에서는 부모의 체감도 증가, 권리의식 향상,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를 가장 큰 변화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부정적인 변화들 중에서는 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표 IV-2-14> 예상되는 시설 운영상의 변화 - 국공립/사립 유치원장 의견 비교

단위:%(명)

시설유형	구분	행정업무 부담감소	신규유아 증가	유치원 경쟁 활성화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유아이동증가로 관리 어려움	경영에 도움
국공립	평균	2.83	2.24	2.47	2.55	2.40	2.70
	사례수	245	242	245	245	243	244
사립	평균	2.08	1.76	2.00	2.04	2.63	2.06
	사례수	249	247	247	250	247	250
t값		8.929***	7.173***	5.824***	6.800***	-2.676***	7.344***

1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4점: 매우 그럴 것이다

*P< 0.5, **P< 0.01, ***P< 0.001

결국 이러한 차이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태도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국공립유치원 원장들은 상대적으로 전자카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를 예측한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혹은 반대로 전자카드제에 대한 태도가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유치원장들의 의견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IV-2-15> 예상되는 부모 입장에서의 변화 - 국공립/ 사립 유치원장 의견 비교
단위: %(명)

시설유형	구분	체감도 증대	부모 권리의식 향상	부모 방문 불편 증대	카드발급 및 관리 부담	낙인효과 감소
국공립	평균	3.19	2.99	2.91	3.01	2.58
	사례수	243	245	245	241	243
사립	평균	2.63	2.78	3.49	3.30	2.07
	사례수	247	246	250	243	248
t값		6.522***	2.550*	6.762***	-4.327***	6.120***

1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4점: 매우 그럴 것이다

*P< 0.5, **P< 0.01, ***P< 0.001

한편,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전문가들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N=40)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은 빈도분석 결과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IV-2-16>과 같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보면 모두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로 인한 각 항목별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부모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체감도 증가(4.31점)와 정원 및 부정수급 관리의 용이함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4.18점)였다. 이들 두 항목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권리의식 제고(3.90점), 정부의 행정부담 경감(3.74점)과 유치원 간 서비스 경쟁 강화(3.74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카드사용의 불편함으로 수요자의 유치원

이용률 저하(분실, 활용미숙, 시골의 경우 왕래가 불편함으로 인한 이용 포기 등), 유치원의 교육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여, 유아교육 전문가 들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응답 분석결과를 i-사랑카드 도입 이후 보육시설에서의 예상변화에 대한 보육 전문가들의 응답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16>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변화에 대한 의견 - 전문가

단위: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아교육 전문가 평균 (N=40)	보육전문가 평균 (N=31)
유아교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5.6	5.6	38.9	41.7	8.3	3.35	3.35
사립유치원 공급확대	5.6	11.1	50.0	27.8	5.6	3.13	3.00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0.0	5.6	11.1	38.9	55.6	4.20	4.06
정부의 행정부담 경감	0.0	2.8	33.3	47.2	16.7	3.78	3.81
유치원 행정업무 간소화	5.6	13.9	13.9	50.0	16.7	3.60	3.46
유아의 유치원 이용 증가	8.3	11.1	33.3	36.1	11.1	3.25	3.48
부모의 정부의 지원금 체감도 증가	0.0	0.0	8.3	38.9	52.8	4.33	4.06
부모의 권리의식 제고	0.0	5.6	19.4	41.7	33.3	3.93	3.84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낙인효과 감소	5.7	5.7	22.9	50.4	14.2	3.78	3.52
유치원 간 서비스 경쟁 강화	2.8	8.3	25.0	36.1	27.8	3.75	3.83
유치원의 교육비 자율화	5.6	13.9	33.3	44.4	2.8	3.18	3.19
서비스 수준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육비 상승	5.6	16.7	36.1	33.3	8.3	3.10	3.16
전자카드 오남용	0.0	19.4	19.4	47.2	13.9	3.50	3.61
카드사용의 불편함으로 수요자의 유치원 이용률 저하	0.0	16.7	50.0	30.6	2.8	3.18	2.94

다음으로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이 전자카드제로 전환됨으로써,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부모, 유치원장, 교사, 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 및 정부정책의 효율성

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이 부모의 만족도와 정부정책의 효율성 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유치원장의 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업무 감소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와 유치원 교사의 만족도도 일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응답을 i-사랑카드 도입 이후 예상되는 만족도 변화에 대한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점수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17>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단위: %, 점

구 분	매우 저하될 것임	약간 저하될 것임	지금과 차이 없을 것임	조금 향상될 것임	매우 향상될 것임	유아교육 전문가 평균(N=40)	보육 전문가 평균(N=31)
부모의 만족도	0.0	2.6	12.8	38.5	46.2	4.30	4.27
기관장의 만족도	7.7	33.3	41.0	17.9	0.0	2.70	2.45
교사의 만족도	2.6	7.7	61.5	20.5	7.7	3.25	3.26
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	0.0	5.1	30.8	46.2	17.9	3.80	3.74
정부정책의 효율성	0.0	0.0	20.5	51.3	28.2	4.10	3.90

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1) 제도설계 및 운영

전자카드제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에게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관련된 의견은 전자카드제의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전자카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 수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이용 시 전자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기준으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현행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이나 기준은 변화하지 않지만, 향후 더욱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소득계층에 따른 보조금 수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9.7%), 이용시간(반일, 전일, 연장제) 및 자녀수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4.4%, 6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해당아동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53.8%, 64.1%로 우세하였다. 이는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인 듯하다.

<표 IV-2-18> 전자카드로 지원받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 - 전문가

단위: %

구 분	소득계층 보조금 수준	해당아동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이용시간	자녀수
동일	10.3	53.8	64.1	25.6	35.9
차등	89.7	46.2	35.9	74.4	64.1

한편,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액수의 결정은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 교육비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59.5%), 다음으로는 부모의 걱정 분담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24.3%). 이러한 의견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다소 이상적으로 여겨지나, 앞으로 지방교육청의 유아교육비 지원액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2-19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통한 지원 액수 결정 - 전문가

단위: %

구 분	정부의 총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 교육비에 기초	부모의 걱정 부담 수준 고려	기타
응답비율	13.5	59.5	24.3	2.7

유치원장들에게는 전자카드제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질문하였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경우, 수업료 지원금액 외에 추가 소요경비(급식비, 종일반 이용비 등)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부모부담금의 납부처로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유치원장들에게 질문하였다. 76.5%의 유치원장들이 금융기관을 부모부담금 납부처로 선호하였으며, 여성(73.7%)보다는 남성원장들이(85.2%) 유치원보다 금융기관을 선호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유치원(81.5%)이 사립유치원(71.5%)보다 금융기관 납부를 선호하였다.

<표 IV-2-20 > 전자카드 지원금 외 추가부담금 납부처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금융기관	유치원	계	$\chi^2(df)$
전체	76.5	23.5	100.0(502)	
성별				
남성	85.2	14.8	100.0(135)	7.757(1)**
여성	73.7	26.3		
연령별				
30대 이하	71.3	28.7	100.0(87)	9.863(2)**
40대	71.4	28.6	100.0(199)	
50세 이상	83.3	16.7	100.0(216)	
시설유형별				
국공립유치원	81.5	18.5	100.0(249)	6.958(1)**
사립유치원	71.5	28.5	100.0(253)	

*P< 0.5, **P< 0.01, ***P< 0.001

한편, 전자카드제 도입 시 부모의 적절한 카드결제 주기는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분기별(3개월)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64.9%), 다음으로 매월(17.1%) 혹은 학기별(11.2%)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치원장의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1개월 단위의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26.1%, 13.8%), 여성 유치원장의 경우 압도적으로 분기별 결제를 선호하였다(71.3%). 또한 기관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일수록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규모가 큰 유치원들이 분기별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1 > 전자카드의 적절한 결제주기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1개월	분기별	학기별	원하는 기간	계	$\chi^2(df)$
전체	17.1	64.9	11.2	6.7	100.0(490)	
성별						
남성	26.1	47.8	13.4	12.7	100.0(134)	27.518(3)***
여성	13.8	71.3	10.4	4.5	100.0(356)	
시설규모별						
30명 이하	20.5	54.9	12.3	12.3	100.0(122)	22.998(9)**
31-80명	21.7	59.0	13.0	6.2	100.0(161)	
81-150명	11.5	74.3	9.5	4.7	100.0(148)	
151명 이상	11.9	78.0	8.5	1.7	100.0(59)	

*P< 0.5, **P< 0.01, ***P< 0.00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부모가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 인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유치원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때, 금융기관에서 유치원로의 계좌이체 방식은 결제 후 5일 이내에 혹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계좌이체 방식 중 유치원장들의 77.3%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한 응답으로 여겨진다. 즉,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입금이 이루어지면 각종 지출을 계획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남성(83.6%)이 여성(75.0%)보다, 국공립유치원(83.9%)이 사립유치원(71.0%)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는 것을 선호했으며, 기관규모별로는 아동 수 3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이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는 것을 선호했고, 아동 수 151명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이 소규모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 후 5일 이내에 입금되는 방식을 선호했다.

<표 IV-2-22> 선호하는 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결제 후 5일 이내	매월 일정한 날짜에	계	$\chi^2(df)$
전체	22.7	77.3	100.0(490)	
성별				
남성	16.4	83.6	100.0(134)	4.092(1)*
여성	25.0	75.0	100.0(356)	
시설유형별				
국공립유치원	16.1	83.9	100.0(242)	11.663(1)**
사립유치원	29.0	71.0	100.0(248)	
시설규모별				
30명 이하	9.0	91.0	100.0(122)	19.096(3)***
31-80명	29.0	71.0	100.0(162)	
81-150명	23.6	76.4	100.0(148)	
151명 이상	31.0	69.0	100.0(58)	

*P< 0.5, **P< 0.01, ***P< 0.00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경우 개인 인증기능만 보유한 학비 전용 카드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의 개인 인증을 위해서는 각 유치원마다 단말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

는지를 유치원장에게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6.3%, 월 1만 5천원 미만으로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10.4%였다. 15,000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표 IV-2-23 >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의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부담할 생각 없음	월10,000원- 15,000원 미만	월15,000원- 30,000원 미만	월30,000원 이상	정부 협약 따라 부담	계	$\chi^2(df)$
전체	62.5	10.4	0.4	0.4	26.3	100.0(491)	
시설유형별							
국공립유치원	55.4	8.7	0.4	0.4	35.1	100.0(242)	19.478(4)**
사립유치원	69.5	12.0	0.4	0.4	17.7	100.0(249)	
도입찬성정도별							
매우 찬성	42.4	15.2	0.0	0.0	42.4	100.0(66)	56.938(12)***
찬성	49.7	13.8	1.2	0.6	34.7	100.0(167)	
반대	68.5	7.4	0.0	0.7	23.5	100.0(149)	
매우 반대	86.2	6.4	0.0	0.0	7.3	100.0(109)	

*P< 0.5, **P< 0.01, ***P< 0.001

단말기 유지보수비의 부담은 유치원의 유형과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하겠다는 응답(35.1%)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해서,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태도별로도 응답내용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자카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유치원장의 경우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자카드제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유치원장들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유치원장들의 경우는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때, 효율적인 원아관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한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유치원장들은 필요하다는 응답(37.3%)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7.4%)이 많았다. 전자출석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들의 실

제 기관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아동의 기관퇴소 일자 등을 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유치원장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먼저 전자카드제가 정착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chi^2(df)$
전체	11.6	25.7	15.3	29.2	18.2	100.0(483)	
시설유형별							
국공립유치원	16.0	28.0	12.8	28.0	15.2	100.0(243)	14.137(4)**
사립유치원	7.1	23.3	17.9	30.4	21.3	100.0(240)	
도입찬성정도별							
매우 찬성	27.3	33.3	9.1	16.7	13.6	100.0(66)	55.711(12)***
찬성	11.6	31.1	20.1	26.2	11.0	100.0(164)	
반대	8.2	24.7	14.4	34.9	17.8	100.0(146)	
매우 반대	6.5	14.0	13.1	33.6	32.7	100.0(107)	

*P< 0.5, **P< 0.01, ***P< 0.001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43.2%)보다 사립유치원(51.7%)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전자카드제에 찬성하는 유치원장들은 상대적으로 전자출석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반대하는 유치원장들은 필요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자출석부는 전자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구이므로,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태도가 전자출석부의 필요성에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해 계획된 시범운영 기간은 2009년 3월~8월까지 6개월 동안이며, 유치원 학기(3, 9월 학기제)에 맞춰 9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유치원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월~12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20.5%였으며,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3.6%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범운영 기간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짧은 듯하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기간 동안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의 차이는 다음 <표 IV-2-25>와 같다.

<표 IV-2-25>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구 분	6개월 이하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 이상	계	$\chi^2(df)$
전체	20.5	55.9	14.4	9.2	100.0(478)	
연령별						
30대 이하	12.2	59.8	19.5	8.5	100.0(82)	16.651(6)*
40대	24.6	48.1	18.7	8.6	100.0(187)	
50세 이상	20.1	61.2	8.6	10.0	100.0(209)	
시설유형별						
국공립유치원	15.3	58.3	16.9	9.5	100.0(242)	9.187(3)*
사립유치원	25.8	53.4	11.9	8.9	100.0(236)	
시설규모별						
30명 이하	17.5	65.0	10.8	6.7	100.0(120)	19.208(9)*
30-80명	16.0	55.2	19.6	9.2	100.0(163)	
81-150명	29.1	46.8	14.2	9.9	100.0(141)	
151명 이상	18.5	61.1	7.4	13.0	100.0(54)	
도입찬성정도별						
매우 찬성	21.2	62.1	10.6	6.1	100.0(66)	21.993(9)**
찬성	23.5	56.6	13.9	6.0	100.0(166)	
반대	17.7	57.1	18.4	6.8	100.0(147)	
매우 반대	19.2	48.5	12.1	20.2	100.0(99)	

*P< 0.5, **P< 0.01, ***P< 0.001

2) 발급절차

부모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신청 장소로 가장 편리한 곳으로 현재의 유아교육비 지원금 장소인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55.6%)를 들었고, 유치원(24.0%), 금융기관(19.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세 기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용자의 특성이나 지역, 이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신청 장소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2-26 > 부모가 선호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신청 장소

단위: %(명)

구 분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금융기관	유치원	기타	계
전체	55.6	19.9	24.0	0.5	100.0(412)

3) 효과적인 홍보수단

전문가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42.9%)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개별 유치원에서 공지하는 방법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지(17.4%)를 추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계획 중인 별도로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지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추천되지 않아, 초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들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인터넷 포털에 일정기간 홍보하는 방안, 대중매체(신문, TV 등) 활용, 전자카드 발급 시 정보 제공, 초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V-2-27> 전자카드제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한 의견 - 전문가

단위: 명, %

효과적인 홍보수단	빈도	퍼센트
개별 유치원에서 공지	6	17.1
정보센터에서 공지	1	2.9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	15	42.9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6	17.1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지	1	2.9
지역신문, 지역게시판에 공지	1	2.9
별도로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	1	2.9
기타	4	11.4
합계	35	100.0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31.4%)과 제도의 복잡성(21.6%), 단말기 등 추가비용부담(20.7%), 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모의 간섭 심화(19.1%)를 들었다. 그 밖의 소수응답으로는 유아학비 수입의 노출가능성이라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 기타응

답으로는 부모들의 사설학원 이용 우려, 유아 이동이 심해짐에 따라 유치원의 학원화에 대한 우려, 부모들의 불편(유치원 방문, 카드분실 등) 등이 있었다. 이 중 부모들의 사설학원 이용에 대한 우려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비용지불이 아닌 개인인증 기능만을 가진 전자카드이므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향후 전자카드제에 대한 홍보 시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은 제도 도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의 복잡성이나 단말기 등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28> 전자카드제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단위: 명, %

구 분	단말기 등 추가비용	유치원 운영에 부모 간섭 심화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	제도의 복잡성	유아학비 수입의 노출가능성	기타	계
전체	20.7	19.1	31.4	21.6	4.5	2.7	100.0(487)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망하도록 하고, 성공적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단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의견(39.5%)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1.1%)보다 우세하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39.5%)도 긍정적인 전망에 못지않게 많아,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일관되게 전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성공적인 정착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부모의 만족도 증가와 재정 및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들었다. 즉,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부모가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체감하게 되고, 권리의식과 선택권이 증가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보화 구축이 이미 잘 되어 있다는 점, 카드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성공적인 정착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전자카드의 오·남용, 유치원 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파행운영과 그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저하, 유치원의 반발,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 등을 들었다.

<표 IV-2-2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 전문가

단위: 명, %

성공적인 정착 전망	빈도	퍼센트
그렇다	15	39.5
아니다	8	21.1
잘 모르겠다	15	39.5
합계	38	100.0

마지막으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카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부모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의 의미와 전자카드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둘째, 철저한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집행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예측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카드 분실, 행정비용 추가, 수혜 대상 아동 및 부모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유아들의 잦은 기관이동과 유치원 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유치원의 파행 운영(학원식 수업, 일부 기관에 수요자 집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기관의 질과 서비스가 동일하도록 유치원의 질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유치원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국공립유치원 증설 포함). 또한 사립학원 등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이미 교육 바우처의 실패를 경험한 일부 국가(영국, 미국 등)들의 사례처럼 별다른 성과 없이 행정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는 성과 위주의 정책이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신용카드 방식의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V.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제언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정부는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는 바우처 제도를 육아지원 분야에서도 2009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바우처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바우처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육아지원과 관련한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육아지원기관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의 실질적 상승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육아지원 바우처와 서비스의 질

육아지원 바우처가 최종적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이 예고된 육아지원 바우처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9년도 9월부터 도입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보육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제도가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 제도를 2009년도 9월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예산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들의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 부족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모와 시설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신청 등 행정업무로 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 보육예산의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가 많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시설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보육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정책효과는 첫째,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지급되어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제고되고 시설과의 소통 증진으로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 둘째, 보육료 신청, 정산

등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이 수평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 셋째, 보육료 승인, 지급,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과 민원부담이 감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이 유치원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중복 지원과 유치원과 학부모간 담합 등 예산 누수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점, 유치원과 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수작업으로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유아학비지원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학부모의 정부 정책 체감도 향상 및 편의성 증진, 둘째,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셋째, 각종 유아 교육 현황 정보 실시간 파악 가능, 넷째, 유치원 및 교육청의 행정 업무 경감이다.

이상에서 ‘보육전자바우처: i-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 제도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과 부모간의 신뢰감 형성,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 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및 육아지원기관과 행정기관간의 수평적 관계 확립, 행정비용과 민원부담 감소에 따른 서비스의 질 관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정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바우처가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관리에 관한 논의는 미흡하다. 수요자들은 정책의 결과 영유아들에게 안정되고 일정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바우처 자체의 효과만으로 논의를 제한하지 말고 총괄적인 육아지원 정책에서 육아지원 바우처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육아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이용 영유아들에게 우수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정단순화만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육아지원 바우처를 통하여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에만 육아지원 바우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등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하여 육아지원 정책이 지니는 최종 목표인 보육 시설과 유치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 바우처와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지원과 바우처 제도를 연계하거나, 보육시설평가인증/유치원평가와 본 제도를 연계할 때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육아지원 바우처가 어느 수준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도입 예정인 육아지원 바우처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정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 즉, 보육에서의 평가인증 통과 서비스, 혹은 유치원 평가를 이수한 서비스 등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만약 행정 효율화 등만을 목표로 한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첫째,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 둘째, 수요자로 하여금 우수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높아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셋째, 행정 간편화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의 목적 역시 최종적으로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성과 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업무 경감의 부수적 효과에 대한 보완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은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 간편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 바우처 제도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고,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도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NEIS 서버를 분할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개발 예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첫째, 바우처관리센터 지원시스템, 둘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셋째, 부모 지원시스템(아이사랑포탈), 넷째, 행정 지원시스템이 포함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특히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있으며, i-사랑카드의 지불·정산 기능을 제시함은 물론 특히 i-사랑카드 부정사용(부당·중복 청구) 모니터링 기능을 제시한다. 또한 i-사랑카드 파손분실, 배송지연, 결제지연 등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비상결제 기능을 제시하기도 하며,

카드 부정사용 및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i-사랑카드 사용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도 적절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이외에 보육 바우처에는 금융기관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전달체계의 일부로 들어오고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도 역시 e-유치원, 금융기관이 주요한 전달체계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사기업인 금융기관과 접근성이 높은 정보시스템이 육아지원 바우처 전달체제로 편입됨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반대하여 바우처 카드 제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바우처 카드 운용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정보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가 자세히 수록될 수록 제도 운영은 용이하겠지만 정보누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다면 정보가 많이 수록될수록 누출시의 위험 정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자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10.3%와 유치원 학부모 11.8%가 '자산정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지역별 형편을 반영하여 수행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운영을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과 어떻게 연결하여야 하는지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이 지금처럼 바우처 제도와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나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육아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현장에 직접 수행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해온 주요 육아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육아지원기관들에게 육아지원예산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육아지원 바우처가 도입된다면 예산을 직접 지원하던 업무를 바우처센터가 많은 부분 대신 담당하게 되므로 행정 간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산의 직접 지원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준 관리사업에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점검되어야 한다.

3. 수요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조건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에 따라 각각 다른 비용구조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이 동일하고 형평적인 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바우처 제도 도입만으로 선의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 수준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당연히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일정 수준이 담보되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공립기관을 선호한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에서 민간개인·가정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보육영유아 78%)이고 전체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취원아 78%)인 현재 상황에서 국공립과 민간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바우처를 국공립과 민간(사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체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고 동일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하기에 형평적이어야 한다. 기관에 따라 운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부 기관에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당초의 수요자 선택권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바우처란 동일한 수준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장 조건이 형성되면 바우처에 부과된 선택권 때문에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메커니즘은 바우처 선택의 당위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급자간 경쟁 환경이 사전에 조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바우처 시장을 둘러싼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바우처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시장 전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 바우처나 의료 바우처의 경우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는데 따라서 인근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를 포함하여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또한 공급자가 한 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일 경우에도 경쟁은 일어나기 어렵다. 특히 저소득 지역의 경우 저렴한 비용의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와 높은 가격을 원하는 기관 사이에 격차가 있을 경우 기관 자체가 진입하지 않

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육아지원 바우처 적용 서비스 가격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분과 영아대상으로 지원되었던 기본보조금을 전자바우처로 묶을 예정이나 일반의 현장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바우처를 지급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바우처를 공급한다는 것은 육아지원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공될 서비스는 어느 가격에 해당되는 서비스이며, 이중 바우처가 담당할 가격은 얼마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유치원의 4가지 유형에 따라 보육/교육 비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식 역시 각각 다르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현재 자율화되어 있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 도입 이전에 영유아 1인당 육아지원 비용 산출은 물론 지원방식 조정에 따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포함하여 국공립과 민간 기관간의 재정운영 차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공립기관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선택권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우처 가격 결정에서는 해당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공히 반일제와 종일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운영 시간에 따라 이미 비용을 각각 다르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바우처와 취원시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즉, 바우처의 대상이 반일제인지, 종일제인지, 만일 바우처가 반일제에 해당하는 지원이라면 종일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혹은 동일한 바우처로 한 기관에서는 반일제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정 분야의 서비스나 상품에 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가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상품에 대한 바우처 수요가 많다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바우처 수급권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는 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차별화에 따른 수익창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Bradford and Shaviro, 2000). 또한 정부가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규제하게 되면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비용이 유발될 수 있고 이 또한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보육시설과 유치원들이 일정 수준의 품질 유지를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육

아지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 운영 역시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바우처 사용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추가 비용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유희정, 2008).

4.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의 인지도 증진

본 연구에서 제도 도입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자카드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 수준은 아직까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정책설명이 요구되었다. 보육현장의 경우 응답 부모들의 51.7%가 본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장들은 응답자의 90.2%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현장에서는 부모들의 79.5%, 원장들의 40.4%가 본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 역시 응답자의 52.7%가 본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육아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본 제도에 대하여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명과 제도에 대한 홍보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보육시설 시설장과 유치원 원장들은 제도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현장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응답하여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응답되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긍정적 기대효과로는 기관간 경쟁 강화로 인한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 행정부담의 감소 및 행정의 편리성 증진, 부모 만족도 향상을 들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들은 카드 부정사용 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제도 도입시 발생이 예측되는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유치원 원장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불편함, 시설/원 재정운영 자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점,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본 제도가 앞으로 더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은 '매달 시설/원에 가서 직접 카드를 끊어야 하는 점'을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 언급하였다(보육시설 이용 부모 68.1%, 유치원 이용 부모 67.6%). 그 외에도 카드발급 혹은 재발급, 카드 보관 및 관리 불편, 개인 정보누출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보육전문가들의 32.3%, 부모들이 50% 수준이었으나 시설장들의 82.2%는 시설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역시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되었으나(84.7%), 유아교육 전문가들 역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5% 수준으로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보수단으로는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응답되었다(보육전문가 53.8%, 유아교육전문가 42.9%). 이 이외에도 중앙부처에서의 홍보, 개별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서의 홍보, 정보센터를 통한 공지, 지역 매체를 통한 홍보, 별도로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 등이 연구결과에서 제안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설명 및 홍보를 통해 현장의 인식이 보다 더 높아진 후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1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설명 및 홍보를 실시하여 육아지원 전자바우처의 개념, 정책 도입의 필요성, 현장에서의 운영방법, 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대효과 등이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자 및 육아지원 현장에 널리 인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유아교육에서의 통합: 그 의미와 실천”. 2008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유아교육학회.
- 김송이(2007).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득(2007).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재정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수(2007).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 김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31. 22-39.
- 김홍원·김창환·김진영·최윤진·김윤석(2007).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배득중 외(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서울: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백선희(2008). “보육서비스 바우처 도입의 의미와 영향”. 복지동향, 115. 29-35.
- 보건복지가족부(2008a).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2008년 업무보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b). 보육 전자 바우처 도입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7a).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투명·효율적 공급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체계.
- 보건복지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7b).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시행 100일 정책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가족부,(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신은수(2007).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한국바른보

육실천연대.

_____(2008). 보육시설의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보육시설의 바우처 제도 도입 연구(제2회 토론회 자료).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 김충환의원실.

유한옥(2005).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유희정(2008), "보육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가정보육시설" 인천시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시설장 토론회 발표문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 방향과 과제". 2008 보육정책 토론회 자료.

이봉주·김용득·여유진·강혜규·남찬섭(2006).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과제: 경험과 전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고용전략과 비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영범(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사례 비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울: 대영문화사.

장지연(2005). "호주의 통합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3월호.

전형준·이만우(2006).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정광호(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117-138.

_____(2008). 바우처 연구. 서울: 법문사.

최봉섭(2006). 영국의 유아교육 바우처 제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성은·최석준(2008). 바우처 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재성(2000) "사회복지 서비스 교환권 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pp.153~172.

홍금자(2008). "보육지원시스템의 전자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영유아보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Bradford D,F and Shaviro, D.N(2000) The Economic of Vouchers, In C.E.Steorerle & V.D.Ooms & G.E.Peterson & R. D. Reischauer(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Washington, D.C.: Briikings Institution and Urban Institute.

CCDF(2008), *Report of State and Territory Plans FY 2008—2009*.

DWD Child Care Section(2007). *Annual Survey of Certified Provider Information 2007*,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EFTA(2006), *Debit and Stored Value Cards for Government : A Growing Trend But States Could Do More*, Electronic Funds Transfer Association.

Gretchen K. & Andrew B(2007), *Using Vouchers to Deliver Social Services: Considerations Based on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 an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Program Experiences*,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

Kathleen S., Sara B. & Gina A.(2008), *Child Care Vouchers and Unregulated Family, Friend, and Neighbor Care*, Washington, D.C.: Briikings Institution and Urban Institute.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08). *Report of State and Territory Plans FY 2008-200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irog, M. A & Johnson, C. L,(2007). Electronic Funds and Benefits Transfers, E-Government, and the Winter Commiss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1), 103-114.

Stat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2008). *OCCF Guidelines for Use of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s(CCDF)*.

Steuerle, C. E.(2000). "Common Issues for Voucher Programs, " In Steuerle, C. E., Van Ooms, D., Peterson, G. E. and Reischauer, R. D.,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3-39.

<신문기사>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 전국 확대”. 농수축산 신문. 2006년 6월 12일자.

“내년 교육예산 38조 6731억원”. 한국교육신문. 2008년 9월 30일자.

“가사간병 ‘전자바우처’ 도입”. 파이낸셜 뉴스. 2008년 9월 1일자.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YTN 뉴스. 2008년 12월 27일.

<인터넷 웹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사회서비스 바우처 센터 <http://www.socialservice.or.kr/>

신나는 예술여행 <http://www.artstour.or.kr/>

미국 사례 관련

<http://www.acf.hhs.gov/>

<http://www.dpw.state.pa.us/ServicesPrograms/ChildCareEarlyEd/>

<http://www.urban.org/>

<http://www.nationalfostercare.org/>

영국 사례 관련

<http://www.accorservices.co.uk/>

<http://www.childcarevouchers.co.uk/>

호주 사례 관련

<http://www.centrelink.gov.au/>

<http://www.efa.org.au/>

부 록

- 부록 1. 전화조사용 질문지: 유치원 부모용
- 부록 2. 전화조사용 질문지: 어린이집 부모용
- 부록 3. 전화조사용 질문지: 유치원장용
- 부록 4. 전화조사용 질문지: 보육시설장용
- 부록 5. 공무원 개인면담 질문 목록: 유아교육
- 부록 6. 공무원 개인면담 질문 목록: 보육
- 부록 7. 유치원장 집단면담 질문 목록
- 부록 8. 보육시설장 집단면담 질문 목록

<부록 1>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읍·면 번호	일련번호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 관련 인식 조사: 유치원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되었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재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개별적 사항의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 연구위원 02)730-3056, hjyoo@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730-3811, dian74@kicce.re.kr
 안재진 부연구위원 02)730-3815, ahnjaejin@kicce.re.kr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connectj@kicce.re.kr

<p>SQ1) ○○님 댁에는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그 아동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p> <p>1. 있다 (아동 연령 : 만 _____ 세) → SQ2)로 갈 것</p> <p>2. 없다 → 면접중단</p> <p>SQ2) 그럼, 그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p> <p>1. 국공립 유치원 2. 사립 유치원</p> <p>SQ3) ○○님 댁의 아동이 유치원을 다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다니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을 다닌 총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총 _____ 년 _____ 개월</p> <p>SQ4) 그럼, ○○님과 그 아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p> <p>1. 어머니 2. 아버지 3.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 4. 기타(적을 것 : _____)</p> <p>DQ1) 성 별(응답자) : 1. 남자 2. 여자</p> <p>D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p> <p>만 _____ 세</p>	<p>문1) ○○님은 정부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2. 아니다</p> <p>문2) ○○님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 문2-1, 문2-2, 문3) 2. 아니다 → 문4)로 갈 것</p> <p>문2-1) 그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p> <p>1. 정확히 알고 있다 2.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 전혀 모른다</p> <p>문2-2) 그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얼마인지를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통해 유치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십니까?</p> <p>1. 그렇다 2. 아니다</p> <p>문3) ○○님은 유치원에서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러한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p> <p>1. 직접 도운 적이 있다 → 문3-1)로 갈 것 2.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 문5)로 갈 것 3. 없다 → 문5)로 갈 것</p>
---	---

문3-1) 그럼, 어떠한 이유로 도움을 주셨습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원장/교사와의 개인적 친분(친구, 친척, 이웃 등)으로
2.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매달 정기적 혹은 일시납으로 일정 금액을 받음)
3. 다른 자녀에 대해 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아서
4. 원장/교사의 요구를 거절 못해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4) 그럼, ○○님은 유치원에서 아동을 거짓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도움을 준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5) ○○님은 현재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문6)**
 2. 만족하는 편이다 ———┐
 ┌—— 3.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5-1) 그럼,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2.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3. 지원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4. 지원받기 위해 유치원에 지원 대상자임을 밝히는 것이 싫어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님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해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정부는 지금까지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변경하여 부모가 직접 유치원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방식만 유치원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지원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는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유치원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지불합니다.

문7) ○○님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이러한 전자카드제로 바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혹은 더 불편할 것 같습니까?

1. 더 좋을 것 같다
 2. 더 불편할 것 같다(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

문7-2)로 갈 것

3.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

문8)로 갈 것

<p>문7-1) 그럼,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서 3. 유치원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아서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지원 대상자라는 낙인감이 사라질 것 같아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p>문7-2) 그럼, 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기마다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2. 카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3.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발급절차가 불편할 것 같아서 4. 기타(적을 것 : _____) <p>문8) ○○님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신청 장소로 어디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2. 금융기관 3. 유치원 4. 기타(적을 것 : _____)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자료분류용 질문 </div> <p>DQ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이상 <p>DQ4) ○○님 닉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9만원 이하 2. 100 ~ 199만원 3. 200 ~ 299만원 4. 300 ~ 399만원 5. 400 ~ 499만원 6. 500만원 이상 <p>DQ5) ○○님(아동의 어머니)은 현재 취업이나 학업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학업중인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나와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일제 2. 시간제(주당 30시간 미만) 3. 전업주부 <p>☞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p>
---	---

<부록 2>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읍·면 번호	일련번호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 관련 인식 조사: 어린이집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되었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재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개별적 사항의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 연구위원 02)730-3056, hjyoo@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730-3811, dian74@kicce.re.kr
 안재진 부연구위원 02)730-3815, ahnjaejin@kicce.re.kr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connectj@kicce.re.kr

<p>SQ1) ○○님 댁에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그 아동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p> <p>1. 있다 (아동 연령 : 만 _____세) → SQ2)로 갈 것</p> <p>2. 없다 → 면접중단</p> <p>SQ2) 그럼, 그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p> <p>1. 국공립 어린이집 2. 법인 어린이집 3. 민간개인 어린이집 2. 가정 어린이집</p> <p>SQ3) ○○님 댁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다니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을 다닌 총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_____년 _____개월</p> <p>SQ4) 그럼, ○○님과 그 아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p> <p>1. 어머니 2. 아버지 3.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 4. 기타(적을 것: _____)</p> <p>DQ1) 성 별(응답자) : 1. 남자 2. 여자</p> <p>D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p>	<p>문1) ○○님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2. 아니다</p> <p>문2) ○○님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p> <p>1. 그렇다 → 문2-1, 문2-2, 문3) 2. 아니다 → 문4)로 갈 것</p> <p>문2-1) 그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p> <p>1. 정확히 알고 있다 2.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 전혀 모른다</p> <p>문2-2) 그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얼마인지를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십니까?</p> <p>1. 그렇다 2. 아니다</p> <p>문3) ○○님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러한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p> <p>1. 직접 도운 적이 있다 → 문3-1)로 갈 것 2.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 문5)로 갈 것 3. 없다 → 문5)로 갈 것</p>
---	---

문3-1) 그럼, 어떠한 이유로 도움을 주셨습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원장/교사와의 개인적 친분(친구, 친척, 이웃 등)으로
2.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매달 정기적 혹은 일시납으로 일정 금액을 받음)
3. 다른 자녀에 대해 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아서
4. 원장/교사의 요구를 거절 못해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4) 그럼, ○○님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거짓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도움을 준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5) ○○님은 현재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 **문6)**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5-1) 그럼,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2.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3. 지원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4.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 대상자임을 밝히는 것이 싫어서
5. 기타(적을 것: _____)

문6) ○○님은 바우처 혹은 i-사랑카드에 대해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정부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변경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방식만 부모가 지불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육료의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지불합니다.

문7) ○○님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이 이러한 i-사랑카드로 바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혹은 더 불편할 것 같습니까?

1. 더 좋을 것 같다
2. 더 불편할 것 같다(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 **문7-2)로 갈 것**
3.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 **문8)로 갈 것**

문7-1) 그럼,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보다 다양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서
3.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아서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지원 대상자라는 낙인감이 사라질 것 같아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7-2) 그럼, 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매달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2. 카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3.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발급절차가 불편할 것 같아서
4. 기타(적을 것 : _____)

문8) ○○님은 i-사랑카드의 신청 장소로 어디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2. 금융기관
3. 어린이집
4. 기타(적을 것 : _____)

문9) ○○님은 i-사랑카드가 신용카드로 발급되면 연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까?

1. 3,000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부담할 수 있다
2. 금액에 상관없이 부담할 의사가 없다
3. 소액의 연회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면 상관없다
4.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이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님은 i-사랑카드에 사용자를 위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선호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선호하는 것을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1순 위		2순 위	
---------	--	---------	--

1. 주유할인
2. 항공마일리지
3. 영화할인
4. 물품구입 무이자 할부
5. 놀이공원 할인
6. 영유아용품 할인
7. 외식쿠폰
8. 기타(적을 것 : _____)

<p>문11) ○○님은 2009년 7월에 i-사랑카드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 DQ3)으로 갈 것</p> <p>2. 시행되지만 시행시기는 늦어질 것이다 → DQ3)으로 갈 것</p> <p>3.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 문11-1)로 갈 것</p> <p>문11-1) 그럼, i-사랑카드가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1.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p> <p>2. 보육시설의 반대가 심해서</p> <p>3. 기타(적을 것 : _____)</p>	<p>자료분류용 질문</p> <p>DQ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p> <p>1. 초등학교 졸업 이하</p> <p>2. 중학교 졸업</p> <p>3. 고등학교 졸업</p> <p>4. 전문대 졸업</p> <p>5. 대학교 졸업</p> <p>6. 대학원 졸업 이상</p> <p>DQ4) ○○님 닉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p> <p>1. 99만원 이하</p> <p>2. 100 ~ 199만원</p> <p>3. 200 ~ 299만원</p> <p>4. 300 ~ 399만원</p> <p>5. 400 ~ 499만원</p> <p>6. 500만원 이상</p> <p>DQ5) ○○님(아동의 어머니)은 현재 취업이나 학업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학업중인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나와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1. 전일제</p> <p>2. 시간제(주당 30시간 미만)</p> <p>3. 전업주부</p> <p>☞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p>
--	--

<부록 3>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읍·면 번호	일련번호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 관련 인식 조사: 유치원장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되었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재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 기관을 통해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육아지원을 부모에게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가 직접 보육료·교육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문항에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개별적 사항의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 연구위원 02)730-3056, hjyoo@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730-3811, dian74@kicce.re.kr
 안재진 부연구위원 02)730-3815, ahnjaejin@kicce.re.kr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connectj@kicce.re.kr

<p>DQ1) 성별 : 1. 남자 2. 여자</p> <p>D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p> <p>SQ1) 귀 유치원에서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국공립 병설인 경우, '원감'도 면접 가능)</p> <p>1. 원장(시설장) 2. 원감 3. 교사 → 면접중단 4. 기타(적을 것 : _____) → 면접중단</p> <p>SQ2) 귀 유치원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p> <p>1. 국공립 단설 유치원 2. 국공립 병설 유치원 3. 사립 법인 유치원 4. 사립 개인 유치원</p> <p>SQ3) 귀 유치원의 현재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 학급 수 : 총 _____ 학급 나. 학생 수 : 총 _____ 명</p> <p>SQ4) 귀 유치원은 언제 설립하였습니까? _____년</p>	<p>문1) 귀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해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p> <p>1. 그렇다 2. 아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정부가 지원해 온 유아학비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권한이 설정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지원된 유아학비를 현금대신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p> </div> <p>문2) 이러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교육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p> <p>1. 잘 알고 있다 2. 알고 있는 편이다 3. 모르는 편이다 4. 전혀 모르고 있다</p> <p>문3) 귀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p> <p>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p>
---	---

문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사용될 경우 귀하는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럴 것이다
2. 약간 그럴 것이다
3.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항	목	점수
1)	유치원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2)	전자카드 홍보에 따라 신규 유아가 늘어날 것이다	
3)	유치원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4)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5)	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6)	부모는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7)	부모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8)	원비 수납일에 유치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9)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이 있을 것이다	
10)	유치원에서 아동의 집안 환경(저소득층 아동) 노출이 감소될 것이다	
11)	학비 수납이 빨라져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5) 귀하는 전체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부모부담금의 납부처는 어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금융기관
2. 유치원

문6) 부모의 카드결제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개월
2. 분기별(3개월)
3. 학기별
4. 부모가 원하는 만큼(1개월~1년)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치원로의 입금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결제 후 5일 이내
2. 매월 일정 날짜에
3. 기타(적을 것: _____)

문8) 카드결제의 시행에 따라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귀 유치원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담할 생각이 없다
2. 월 10,000원 ~ 15,000원 미만
3. 월 15,000원 ~ 30,000원 미만
4. 월 30,000원 이상
5.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할 것이다

<p>문9) 효과적인 원아 관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해서 귀하는 전자출석부 기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보통/그저 그렇다 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p>문10) 귀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시범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개월</p> <p>문11) 귀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말기 등 추가 비용 부담 2. 부모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간섭 심화 3.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 4. 제도의 복잡성 5. 유아학비 수입의 노출 가능성 6. 기타(적을 것 : _____)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자료분류용 질문</div> <p>DQ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이상 <p>DQ4) 귀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원장으로 일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자가 '원감일' 경우, 원감으로 일한 기간을 받을 것)</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개월</p> <p>☞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p>
--	---

<부록 4>

시·도 번호	시·군·구 번호	읍·면 번호	일련번호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 관련 인식 조사: 보육시설장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되었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재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 기관을 통해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육아지원을 부모에게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가 직접 보육료·교육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바우처’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문항에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개별적 사항의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 연구위원 02)730-3056, hjyoo@kicce.re.kr
이정원 부연구위원 02)730-3811, dian74@kicce.re.kr
안재진 부연구위원 02)730-3815, ahnjaejin@kicce.re.kr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connectj@kicce.re.kr

<p>DQ1) 성별 : 1. 남자 2. 여자</p> <p>D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p> <p>SQ1) 귀 어린이집에서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원장(시설장) 2. 원감 3. 교사 → 면접중단 4. 기타(적을 것 : _____) → 면접중단</p> <p>SQ2) 귀 어린이집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외,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인 경우 면접중단) 1. 국공립 보육시설 2. 법인 보육시설 3. 민간개인 보육시설 4. 가정 보육시설</p> <p>SQ3) 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_____명</p> <p>SQ4) 귀 어린이집은 언제 설립하였습니까? _____년</p>	<p>문1) 귀하는 i-사랑카드에 대해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변경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방식만 부모가 지불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육료의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지불합니다.</p> <p>문2) 이러한 i-사랑카드가 보육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알고 있는 편이다 3. 모르는 편이다 4. 전혀 모르고 있다</p> <p>문3) 귀하는 i-사랑카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p>
--	--

문4) i-사랑카드가 사용될 경우 귀하는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럴 것이다
2. 약간 그럴 것이다
3.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항 목	점수
1)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2) i-사랑카드 홍보에 따라 신규 영유아가 늘어날 것이다	
3) 어린이집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4)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5) 영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6) 부모는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7) 부모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8) 원비 수납일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9)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이 있을 것이다	
10)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집안 환경(저소득층 아동) 노출이 감소될 것이다	
11) 보육료 신청·승인 등이 없어져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될 것이다	
12) 보육료 수납이 빨라져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5) 부모의 카드결제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개월
2. 분기별(3개월)
3. 학기별
4. 부모가 원하는 만큼(1개월~1년)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적절한 카드결제 수수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부담할 생각이 없다
2. 0.5% 이하
3. 0.5% 초과 ~ 1.0% 이하
4. 1.0% 초과
5.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할 것이다

문7) 귀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어린이집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
2. 약간 부담이 될 것이다
3.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p>문8) 카드결제 시행에 따라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귀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카드결제 단말기는 정부와 금융사간의 협약을 통해 무료 보급할 예정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담할 생각이 없다 2. 월 10,000원 ~ 15,000원 미만 3. 월 15,000원 ~ 30,000원 미만 4. 월 30,000원 이상 5. 정부 협약에 따라 부담할 것이다 <p>문9) 효과적인 영유아 관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해서 귀하는 전자출석부 기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보통/그저 그렇다 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p>문10) 귀하는 i-사랑카드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드 결제 수수료의 부담 2.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간섭 심화 3.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 4. 제도의 복잡성 5. 보육료 수입의 노출 가능성 6. 기타(적을 것 : _____) 	<p>문11) 귀하는 2009년 7월에 i-사랑카드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 DQ3 2. 시행되지만 시행시기는 늦어질 것이다 → DQ3 3.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 11-1) <p>문11-1) i-사랑카드가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 2. 보육시설의 반대가 심해서 3. 기타(적을 것 : _____)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font-weight: bold;">자료분류용 질문</div> <p>DQ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이상 <p>DQ4) 귀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원장으로 일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개월</p> <p>☞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p>
---	---

<부록 5>

[공무원 개인면담 질문 목록: 유아교육]

이름		소속 기관명	
----	--	-----------	--

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제') 도입이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4.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적인 불편함(공무원 입장에서)은 어떤 것입니까?
5.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행정기관과 유치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6. 전자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액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홍보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유치원장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은?)
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0.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성공적인 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6>

[공무원 개인면담 질문 목록: 보육]

이름		소속 기관명	
----	--	-----------	--

1. i-사랑카드 도입이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i-사랑카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4. i-사랑카드 도입과 함께 e-보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언(공무원 입장에서)은 어떤 것입니까?
5.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해 행정기관과 보육시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6. i-사랑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 특수시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i-사랑카드 도입 및 사용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홍보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보육시설장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은?)
9. i-사랑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0. i-사랑카드의 성공적인 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7>

[유치원장 집단면담 질문목록]

현장의 관계자분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까?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복잡한 업무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기관의 행정업무가 감소하고, 교육청과 유치원과의 관계가 보다 평등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자카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원장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출석부의 주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 한 개의 카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부모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학비 지원카드와 보육카드와의 통합의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학비 지원카드와 보육카드와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8>

[보육시설장 집단면담 질문목록]

- 현장의 관계자분들은 i-사랑카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까?
-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해 보육료 정산 및 지급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e-보육에 대한 입력 등의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장들이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해 부모의 권리의식도 높아지지만 지자체와 보육시설간의 관계가 보다 평등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출석부를 도입한다면, 현재 보육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장·단점이 예상됩니까?
- i-사랑카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 부모가 i-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i-사랑카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 한 개의 카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부모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와 i-사랑카드의 통합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와 i-사랑카드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